

2019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



보건복지부

목 차

I

| | |
|---------------------------------------|----|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개요 | 1 |
|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추진배경 | 3 |
|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운영의 기본원칙 | 9 |
| 3.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운영의 목적 및 법적 근거 | 10 |

II

| | |
|--------------------------|----|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 15 |
| 1. 대표협의체 | 17 |
| 2. 실무협의체 | 30 |
| 3. 실무분과 | 34 |
| 4.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38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49

-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주요 기능 51
-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52
 - 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52
 - 나.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62
 - 다. 시·군·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72
 - 라. 시·군·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73
 - 마.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0
 - 바.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1
 - 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92

기타 사항 103

- [청탁금지법 관련] 105

주요 개정사항

| 구분 | 변경 전 | | 변경 후 | | 변경사유 |
|--------------------------|--|--|---|--|---|
| I.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개요 | | | | | |
| 법적 근거 (p.11) | 구분 | 현행(사회보장급여법) | 구분 | 현행(사회보장급여법) | 사회보장 급여법 개정사항 반영 |
| | 위원 자격 요건 |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 사회보장분야 전문가 -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자 - 복지위원의 대표자 -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위원 자격 요건 |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 사회보장분야 전문가 -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자 - 읍·면·동 단위 <u>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u> -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
| II.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 | | | | |
|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의 구성 (p.19) | 4) 사회보장 연계 영역 위의 해당분야 외에 법령상 협의체 위원 위촉여건을 갖춘 자 중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을 발굴하여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음 | | 4) 사회보장 연계 영역 위의 해당분야 외에 법령상 협의체 위원 위촉여건을 갖춘 자 중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을 발굴하여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음 <u>- 보건복지 연계·협력을 통한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건소 방문간호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자살예방센터 등 보건분야 종사자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종사자, 통합사례관리사 등 복지분야 종사자를 협의체위원으로 최대한 영입</u> | | 보건 서비스와 연계 강화를 위해 보건 전문가의 대표 협의체 위원 참여 규정 |
| 대표 협의체 구성 예시 (p.26) | 그밖에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보장 분야 대표 |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문화, 고용, 주거, 교육, 생활체육, 경제단체, 기업 등 지역 사회보장 연계영역의 대표 | 그밖에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보장 분야 대표 |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문화, 고용, 주거, 교육, 생활체육, (사회적)경제 관련 단체, 기업 등 지역사회보장 연계 영역의 대표 | 대표 협의체에 사회적 기업인 등도 참여가능하도록 명시 |
| 실무분과 구성 (p.36) | 3) 기능별 분과 •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욕구와 기능에 맞게 다양한 형태의 분과 구성이 가능함 | | 3) 기능별 분과 •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욕구와 기능에 맞게 다양한 형태의 분과 구성이 가능함 - 사회보장분야 확대영역을 반영, 소득보장, 보건의료, 고용·주거, 문화·체육, 복지 위기가구 발굴, 지역사회통합돌봄, 통합사례관리, 자원동원·배분, 자살예방*, 사회적 경제, 마을 분과 등 구성 가능 <u>* 특히 지역 내 빈곤 가구의 자살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자살예방 분과 설치 권고</u> | | 실무 분과에 자살예방 및 사회적 경제 분과를 설치가능하도록 명시 |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사유 |
|--------------------------------|---|---|--|
| 읍·면·동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구성 (p.4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읍·면·동 협의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간사 등 필요 인력을 지원 받을 수 있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군·구청장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간사 등) 및 운영비(회의 참석 수당 등)를 지원할 수 있음(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제5항) | 시·군·구에서 읍·면·동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지원 가능 근거 명확화 |
| 읍·면·동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회의 운영 (p.42) | <p>6) 회의운영</p> <p>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회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p> | <p>6) 회의운영</p> <p>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회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전자우편 또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대신 가능</p> | 읍·면·동 협의체 회의 소집 시 긴급한 경우, 서면이 아닌 우편·문자 전송으로 통지할 수 있도록 명시 |

Ⅲ.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 사회복지법외부추천이사제도 (p.74) | <p>1 관련 법령</p> <p>사회복지법인은 이사정수의 1/3(소수점 이하는 절사)이상을 시·도의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2배수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p> | <p>1 관련 법령</p> <p>사회복지법인은 이사정수의 1/3(소수점 이하는 절사)이상을 시·도의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3배수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p>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사항 반영 | | | | | | | | | | | | | |
|-------------------------------------|--|--|--|------|---------------------------------|--|--------|-----|------|----------------|------|------------------|------------------|---------------------|-------------------------------------|---|
| 읍·면·동 협의체의 주요 기능 (p.85) | <p>3 지역 특화사업 추진</p> <p>〈신설〉</p> | <p>3 지역 특화사업 추진</p> <p>주의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너무 많은 지역 특화사업 추진으로 인해 핵심 역할인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의 활동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유의할 것 ⇒ 즉 지역특성이 반영된 2~3개 이내의 특화사업을 중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p> | 특화사업이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실제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수의 특화사업 운영을 지양하도록 권고 | | | | | | | | | | | | | |
|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운영지원 (p.98) | <table border="1"> <thead> <tr> <th>수당의 종류</th> <th>지급액</th> </tr> </thead> <tbody> <tr> <td>가족수당</td> <td>배우자 월40,000원 가족 1명당 월20,000원</td> </tr> </tbody> </table> | 수당의 종류 | 지급액 | 가족수당 | 배우자 월40,000원 가족 1명당 월20,000원 | <table border="1"> <thead> <tr> <th>수당의 종류</th> <th>지급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5">가족수당</td> <td>○ 배우자 월40,000원</td> </tr> <tr> <td>○ 자녀</td> </tr> <tr> <td>- 첫째 자녀 월20,000원</td> </tr> <tr> <td>- 둘째 자녀 월60,000원</td> </tr> <tr> <td>- 셋째이후 자녀 월100,000원</td> </tr> <tr> <td>○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월20,000원</td> </tr> </tbody> </table> | 수당의 종류 | 지급액 | 가족수당 | ○ 배우자 월40,000원 | ○ 자녀 | - 첫째 자녀 월20,000원 | - 둘째 자녀 월60,000원 | - 셋째이후 자녀 월100,000원 | ○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월20,000원 | '17.1.6. 개정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맞추어 다자녀 전담 직원에 대한 처우개선(가족수당 지원금 확대)권고 |
| 수당의 종류 | 지급액 | | | | | | | | | | | | | | | |
| 가족수당 | 배우자 월40,000원 가족 1명당 월20,000원 | | | | | | | | | | | | | | | |
| 수당의 종류 | 지급액 | | | | | | | | | | | | | | | |
| 가족수당 | ○ 배우자 월40,000원 | | | | | | | | | | | | | | | |
| | ○ 자녀 | | | | | | | | | | | | | | | |
| | - 첫째 자녀 월20,000원 | | | | | | | | | | | | | | | |
| | - 둘째 자녀 월60,000원 | | | | | | | | | | | | | | | |
| | - 셋째이후 자녀 월100,000원 | | | | | | | | | | | | | | | |
| ○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월20,000원 | | | | | | | | | | | | | | | | |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사유 | | | | | | | | | | | | | | | | |
|--|---|---|---------------------------|--|-----|---|------|--|--------------|---|----|----------|---|-----|--|--------------|--|--------------|---------------------|
|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운영지원 (p.98) | ③ 전담직원 처우수준(권고) 직급은 사무국장(부장급), 팀장(팀장급), 직원(사회복지사)으로 적용 | ③ 전담직원 처우수준(권고) 직급은 사무국장(부장급), 팀장(팀장급), 직원(사회복지사)으로 하되, 협의체 사무의 지속성 및 안정적 추진을 위해 근무 형태는 무기계약직을 원칙으로 함 | 전담직원에 대한 처우개선 권고 | | | | | | | | | | | | | | | | |
|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운영관련 청탁 금지법 질의사항 (p.117) | <p>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p> <table border="1" data-bbox="327 491 713 909"> <thead> <tr> <th data-bbox="327 491 624 560">구분</th> <th data-bbox="624 491 713 560">가액 범위</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27 560 624 657">1. 음식물 : 제공자와 공직자들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td> <td data-bbox="624 560 713 657">3만원</td> </tr> <tr> <td data-bbox="327 657 624 784">2. 경조사비 :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부조금을 대신 하는 화환·조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td> <td data-bbox="624 657 713 784">10만원</td> </tr> <tr> <td data-bbox="327 784 624 909">3. 선물 : 금전 및 제1호에 따른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td> <td data-bbox="624 784 713 909">5만원 /10만원</td> </tr> </tbody> </table> | 구분 | 가액 범위 | 1. 음식물 : 제공자와 공직자들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 3만원 | 2. 경조사비 :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부조금을 대신 하는 화환·조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 10만원 | 3. 선물 : 금전 및 제1호에 따른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 5만원 /10만원 | <p>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p> <table border="1" data-bbox="734 491 1120 1124"> <thead> <tr> <th data-bbox="734 491 1031 560">구분</th> <th data-bbox="1031 491 1120 560">가액 범위</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734 560 1031 657">1. 음식물 : 제공자와 공직자들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td> <td data-bbox="1031 560 1120 657">3만원</td> </tr> <tr> <td data-bbox="734 657 1031 753">2. 경조사비 :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td> <td data-bbox="1031 657 1120 753">5만원 /10만원</td> </tr> <tr> <td data-bbox="734 753 1031 1124">3. 선물 :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 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가공품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 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td> <td data-bbox="1031 753 1120 1124">5만원 /10만원</td> </tr> </tbody> </table> | 구분 | 가액 범위 | 1. 음식물 : 제공자와 공직자들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 3만원 | 2. 경조사비 :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 | 5만원 /10만원 | 3. 선물 :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 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가공품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 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 | 5만원 /10만원 | 청탁금지법 개정사항 반영 |
| 구분 | 가액 범위 | | | | | | | | | | | | | | | | | | |
| 1. 음식물 : 제공자와 공직자들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 3만원 | | | | | | | | | | | | | | | | | | |
| 2. 경조사비 :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부조금을 대신 하는 화환·조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 10만원 | | | | | | | | | | | | | | | | | | |
| 3. 선물 : 금전 및 제1호에 따른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 5만원 /10만원 | | | | | | | | | | | | | | | | | | |
| 구분 | 가액 범위 | | | | | | | | | | | | | | | | | | |
| 1. 음식물 : 제공자와 공직자들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 3만원 | | | | | | | | | | | | | | | | | | |
| 2. 경조사비 :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 | 5만원 /10만원 | | | | | | | | | | | | | | | | | | |
| 3. 선물 :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 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가공품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 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 | 5만원 /10만원 | | | | | | | | | | | | | | | | | | |

I

PART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개요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추진배경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운영의 기본원칙
3.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운영의 목적 및 법적근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개요

I P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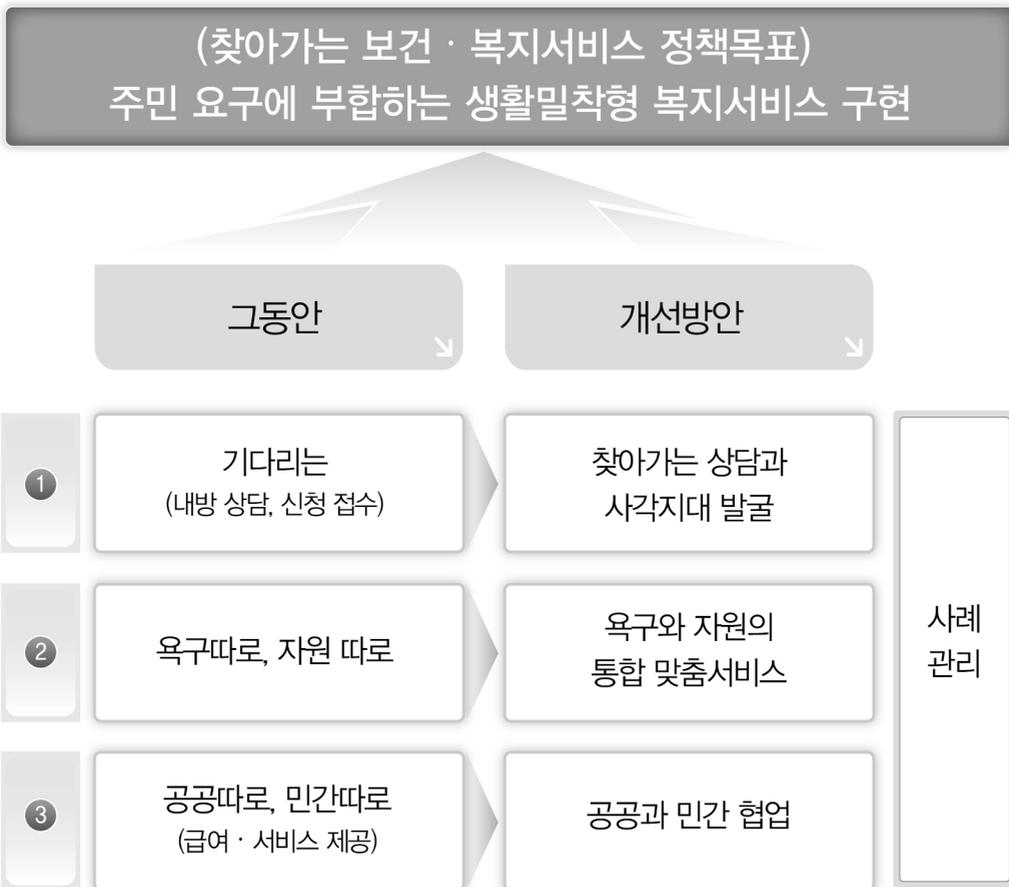
I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추진배경

가 지방분권에 따른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변화

- 지방정부 주도의 지역복지 실현을 위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2003년 7월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운영과 함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지역복지 활성화의 기틀 마련
- 2005년부터 지방분권 강화 차원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던 사회복지 관련 사업 중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14년까지 분권교부세를 통하여 재정을 지원
 - * 종전 분권교부세 지원사업 중 정신요양, 장애인생활시설, 양로시설사업(3개)은 국고 지원으로 환원되고, 그 외 지방이양사업은 '15년부터 보통교부세로 통합 지원
- 지방분권은 단순히 중앙정부의 역할을 지방정부로 이관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중심의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구축이라는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것이며, 이는 공공, 민간,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한 지역복지의 통합적 체계 구축을 의미
- 이에 따라 각 지방정부는 과거 중앙정부의 사업을 집행하던 차원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 계획의 수립·운영과 이에 필요한 지역 내 네트워크 구축, 복지 사각지대 및 자원발굴, 서비스 연계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중심 주체로 변화
- 특히, '12년 1월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은 기존 사회복지서비스 외에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포괄하는 사회서비스 개념을 도입하여 국민의 보편적·생애주기적인 특성에 맞게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까지 포괄
 - 그간 ‘사회보장기본법’의 기본이념인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기에는 기존 ‘사회복지사업법’이 사회복지사업 중심의 서비스 이용 절차와 운영에 한정되어 있어 중앙과 지방의 유기적인 연계가 다소 미흡했음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으로 약칭) 제정으로 중앙부처와 유기적 연계를 통한 지역 단위의 종합적 사회보장, 지역 간 사회보장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체계가 정비되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확대 및 활성화의 전기가 마련됨
- 특히, 현 정부는 사회보장전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의 모든 읍·면·동에 찾아가는 복지 전담팀(방문간호사 포함)을 설치하여 민관협력을 통한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강화”를 국정과제로 추진 중



※ 사례관리 ① 복합적인 욕구가 있으나 ② 스스로 해결방법을 찾기 어려운 대상에게 ③ 지속적 상담과 다양한 서비스 연계로 ④ 문제해결과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서비스

- (전국 복지기반 구축) 모든 읍·면·동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확산하여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위기가구를 선제적 발굴·지원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 읍·면·동 : ('17) 2,600개소 → ('18) 3,509개소

- (전담 공무원 확충) 사회복지공무원, 방문간호사 등 인력 확충*하여 현장 밀착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구성

| 청년 일자리 창출 | '18년 | ~'22년 |
|--------------|---------|---------|
| 사회복지직 공무원 총원 | 2,600여명 | 12,000명 |
| 방문간호직 공무원 총원 | 220여명 | 3,500명 |

- (보건·복지서비스 강화) 복지사각지대 발굴, 찾아가는 복지상담, 위기가구 통합사례 관리, 방문건강관리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강화

* 긴밀한 현장 대응 위해 읍·면·동에 방문복지차량 지원(기존 1,814대, 신규 847대)

- (지자체 역량 강화) 읍·면·동 역량강화 및 지역별 편차 개선을 위한 전문 컨설팅, 성공사례 전파, 담당자 맞춤 교육 등 전문성 강화

| | |
|----------|--|
| 전문 컨설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49개소 대상(17개 시·도, 32개 시·군·구) • 연 2회 이상 심층 컨설팅 시행 |
| 담당 맞춤 교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자급·실무자급 맞춤 교육 과정 개설·운영 •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시·도 교육원 등과 연계 |
| 우수사례 전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찾아가는 보건복지 우수사례집 등 제작 보급 • 사업 추진 우수 지자체 및 우수 직원 포상 |

- (민관협업 강화) 복지기관 운영자, 지역주민(명예사회복지공무원, 복지통·이장, 부녀회장) 등으로 구성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통하여 실질적인 복지 협력체계 구축
- 지역 복지기관(종합사회복지관 등)과 지자체(읍·면·동)와의 상호 소통 및 정례적 회의 운영으로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문제해결 도모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변화 추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격 및 기능변화 추이〉

| 구 분 | '05.7.31. 이전 | '05.7.31.~'15.6.30. | '15.7.1. 이후 |
|---------|----------------------------|--|---|
| 법 적 근 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
| 명 칭 | 사회복지위원회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 목 적 |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또는 건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지역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심의/건의 -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 의료서비스 연계·협력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 -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 강화 |
| 성 격 | 심의/자문기구 | 심의/자문기구 | 기능 강화 |
| 비 고 |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운영 | 공공과 민간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지역복지 거버넌스의 구조와 기능 확대 | 기존 사회복지에서 탈피하여 사회보장으로 범주 확대 |



지역사회보장 환경변화를 반영한 사회보장급여 제공기관·법인·시설·단체 간 연계 및 협력 필요성

- 현재까지 지역 차원의 사회보장서비스 제공 인프라는 민간 영역을 중심으로 발달
- 복지대상자가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필요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을 위해서 공공과 민간 영역의 협력적 파트너십을 토대로 한 민관협력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며,
 - 사회보장급여의 주요 공급주체인 국가, 시장, 비영리민간, 비공식부문은 각자의 장점을 보유하고 동시에 한계를 가지고 있어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민·관협력의 중요성 대두

- 공공과 민간은 제각기 다른 운영방식과 조직체계 하에서 운영되고 있어 조직 체계를 물리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바,
 - 개별 사회보장서비스 제공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지역사회 단위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 충족을 위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통합적 제공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급여 관련기관·법인·시설·단체 간 연계와 협력을 통한 민·관협력이 필수적

다 지역사회 공동체기능 회복과 사회적 자본 증대의 필요성

- 지역공동체란 지역 복지문제를 지역 주민 스스로 해결해 가면서 주민 간 신뢰와 협동심 배양, 건전한 지역 풍토 조성, 주민의 자긍심 고취, 지역의 자생력 촉진 등을 통하여 선순환의 발전이 계속되는 생활 공동체를 의미
- 지역공동체 회복을 통한 복지문제 해결은 지역사회에서 발굴한 복지 자원을 활용하여 복지 문제를 현장에서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복지행정의 효율성과 주민의 복지체감도와 만족도를 동시에 제고 가능
 - 지역의제 발굴부터 자원의 배분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총량을 극대화하여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최대한 제공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의 민관협력의 구심점으로서,
 -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역사회 내 복지자원을 활용하여 지원대상자에게 필요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사회보호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함
 - 더욱이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운영으로 민관협력의 공간범위가 마을 또는 생활권역으로 세분화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자원발굴·연계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지역공동체 기능회복과 사회적자본 증대와 더욱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었음

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지역사회 조직화의 가능성

-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다자간 직접 의사소통이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물리적 조직 구조 구축 가능
-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은 효율적인 정보교환과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기존의 관료제적 조직 구조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네트워크 조직 구조를 현실화
- 그 결과, 사회복지분야에서도 저비용·고효율의 네트워크형 조직 운영의 가능성 대두,
 - 다만 그러한 가능성도 궁극적으로 조직구성원의 인식전환을 통해서만 가능
- 그러므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네트워크형 조직구조를 통해 당면한 지역사회보장의 현안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근본적인 취지인 바,
 - 이는 지역사회보장의 기획과 실행 기능을 위한 협의적 의사결정, 상생적 조직 관계, 지역사회 공동체, 사회적자본 등을 주요 개념으로 두고, 네트워크 방법론을 토대로 구성
 - 특히, 공공분야의 통합사례관리 도입으로 공공과 민간의 양 영역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한 지역단위의 통합서비스 기반 마련에 대한 욕구가 분출, 지역주민의 욕구충족을 위하여 서비스의 조정과 민관협력 기반마련이 중요

-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민관협력의 거버넌스를 실현하기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운영되는 과정에 지켜야 하는 원칙은 다음과 같음
 -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이 개방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함
 - ② 민간분야, 지방자치단체, 학계, 주민의 참여를 망라하여 구성해야 함
 - ③ 협의체 구성의 대표성을 확보하여야 함
 - ④ 협의체 구성에서 균형을 유지하여야 함
 - 특정 조직이나 인물에 편중된 구성이 되지 않도록 함
 - ⑤ 실무자의 참여를 포함하는 다층적인 구성이 되어야 함. 그리고 운영과정에서도 실무자의 참여와 활동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함
 - ⑥ 협의체 운영이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탄력적인 것이어야 함
 - 관련 조례의 내용이나 구성, 논의 의제 등에서 지역특성이 반영되어야 함
 - ⑦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되, 궁극적으로 민간의 주도와 공공의 지원의 구조를 지향하여야 함
 - 지역사회 거버넌스의 여건에 따라 방식을 달리할 수 있으나, 민간주도·공공지원이라는 지향점은 동일함
 - ⑧ 의사소통 채널을 다양화하여야 함
 - 수평적 의사소통 채널 뿐 아니라 연석회의* 등 다양한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하여야 함
 - * 둘이 상의 회의체가 합동으로 여는 회의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의 기본원칙은 모든 지역에서 공히 지켜져야 하며, 이는 지역별로 상이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반드시 준수해야 함

3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운영의 목적 및 법적 근거

가 목 적

- 첫째, 민관협력의 구심점으로서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운영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집행·평가 등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과정에 민간의 참여·협력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
 - 특히,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지원대상자에게 필요한 급여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 또는 실무자 등 다양한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사회보호체계를 구축·운영
- 둘째,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사회보장급여 제공 기반 마련
 - 종전의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위주의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고용·주거·교육·문화·환경관련 서비스 제공자 간 연계망(network)을 구성하여 수요자의 다양하고 복합적 욕구에 대응한 서비스를 Any-stop, One-Stop으로 제공
 - 지역 내 사회보장서비스 제공관련 기관·법인·시설·단체 간 연계·협력 강화를 통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시·군·구의 희망복지지원단 또는 읍·면·동의 통합사례관리 기능을 효율적으로 지원
 -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추진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중심으로 복지통(이)장,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복지기관 종사자 등의 자발적인 참여 등 긴밀한 민관협력으로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 발굴, 민간자원 발굴 및 자원 연계 활성화 추진
- 셋째,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급여 제공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으로 지역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를 조성
 - 지역의 다양하고 잠재적 복지자원을 발굴·확충하고, 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자원 및 지원대상자에 대한 정보 등을 공유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의 중복·편중·누락을 방지
 - * 복지자원 발굴 형태 : 기부금·후원금품 지정기탁, 자원봉사, 재능기부, 생필품 지원 등
 - 현행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추진되는 타부처·공공기관 복지대상자 지원의뢰체계*를 민간 복지기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 * 연금공단 등 읍·면·동 의뢰가능, 보건소·읍·면·동 상호 의뢰 가능

- 복지대상자의 서비스 제공 누락과 불필요한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한정된 복지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복지기관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종합·노인복지관 구축(1단계, '17.6월 개통), 장애인복지관(2단계, '18.5월 개통), 아동복지시설 등(3단계, '19년 초 개통 예정)으로 단계적 확대 추진

○ 넷째, 민·관 협력을 통해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강화를 위해 읍·면·동 단위에 주민 네트워크를 조직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으로 새롭게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조직·운영 되면서 주민 스스로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대상자 발굴업무, 사회보장 자원발굴 및 연계업무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 네트워크를 구축

- 즉,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하는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 인적 자원망을 통해 마을 또는 생활권역 내 취약계층 발굴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생계 곤란 가구 동향 파악 및 필요한 지원을 연계

나 법적 근거

| 명칭 | 시·군·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
|---------|---|---|
| 근거 |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 목적 및 기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 및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 협력 강화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평가, 지역 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 시·군·구 사회보장 급여 제공 및 사회보장 추진 등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 가정 상시 발굴 - 사각지대의 발굴 및 맞춤형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인적 안전망 구축 -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지역 사회 자원 발굴 및 연계(후원, 자원봉사, 사회공헌 등) |
| 위원 자격요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 사회보장분야 전문가 -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자 -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 - 사회보장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복지위원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 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

| 명 칭 | 시·군·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
|----------|--|---|
| 위원회 구성 |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 | - 협의체 위원의 수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이 되도록 구성 |
| 위원장 선출방법 | 위원 중에서 호선 (공무원인 위원/위촉직 공동위원장 선출) | - 협의체 위원장은 읍·면·동장(공공위원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 민간 위원장이 공동으로 구성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 |
| 위원 임기 | 2년, 위원장은 1회 연임 가능 | -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 (공무원 위원은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함) |
| 협의체 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1명 포함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위원은 협의체 위원장이 임명/위촉 • 보장기관 장의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 지원 가능 •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대상자 발굴, 지역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지역 사회보호체계 구축·운영 등 - (위원회 구성) 읍·면·동장과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군·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읍·면·동별 10명 이상), 읍·면·동장과 민간위원(호선)으로 공동위원장 체제 운영 - (위원임기) 2년, 연임 가능 | - 복지사각지대 발굴, 자원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단위 분과 및 운영위원 등 운영 가능 |

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특성

1) 지역성

- 지역주민 생활권역을 배경으로 조직·운영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주민의 복지 욕구, 복지자원 총량 등을 고려,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지원대상자에 대한 현장밀착형 서비스 제공기반 마련
- 일반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수행하는 보편적인 사업과 함께, 해당 지역의 특성·복지환경·문화 등을 반영하여 협의체의 기능 범위 내에서 자체 재원을 활용한 지역사업도 추진가능

2) 참여성

- 네트워크 조직을 표방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법적 제도나 규제에 앞서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일차적인 추동력으로 작용
 - 특히,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 위촉요건으로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 위원 구성 시 지역주민에 대한 참여 기회를 대폭 개방
- 따라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 필요
 - 지역사회 내 다양한 분야의 대표성을 가진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 등의 참여를 전제로 함
 - 복지사각지대 및 자원 발굴과 서비스 제공·연계를 위해 다양한 지역주민들의 폭넓은 참여 필요

3) 협력성

-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네트워크형 조직 구조를 통해 당면한 지역사회 복지문제 등의 현안을 해결하는 민·관협력 기구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평가를 위한 협의적 의사결정, 상생적 조직 관계, 지역사회 공동체, 사회적 자본 등을 주요 개념으로 두고,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운영

- * 네트워크 조직으로 조직 및 구성원 사이의 의미있는 상호관계 존재, 자원 교환 및 공동목적 달성을 위한 지속적 상호작용, 신뢰에 바탕을 둔 상호작용, 합의된 규칙에 의한 통제, 구성원 간 상당 수준의 자율성을 특징으로 함

4) 통합성

- 지역사회 내 복지자원 발굴 및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을 통하여 수요자의 다양하고 복잡한 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
- 지역주민의 삶의 터전인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주민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삶의 각 영역을 포괄하는 다양한 서비스(보건, 복지, 문화, 고용, 주거, 교육 등)가 지역사회에서 제공되어야 함

5) 연대성

- 자체적으로 해결이 곤란한 복지문제는 지역주민 간 연대를 형성하거나 인근 지역과 연계·협력을 통하여 복지자원을 공유함으로써 해결
- 공공부문의 서비스를 보완하는 사회복지법인 외에 비영리 시민단체나 조직의 지역복지 활동 참여 확대 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을 통한 복지욕구 충족 등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사회보장주체의 연대가 중요

6) 예방성

- 지역 주민의 복합적인 복지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
 - * 예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자체 기획사업
 - ① 문제의 발견과 분석 - ② 지역사회 욕구조사 - ③ 사업기획 및 실행(프로그램의 수립 및 실행) - ④ 평가 - ⑤ 평가결과 환류의 선순환체계 형성

II

PART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1. 대표협의체
2. 실무협의체
3. 실무분과
4.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II Part

II

1 대표협의체

가 구성의 원칙

- 대표성 :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공공과 민간을 포함한 해당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 이해관계자를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
- 포괄성 : 대표협의체 위원은 해당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 영역(보건·복지·고용·주거 등) 및 연계 분야의 이해관계자를 포괄할 수 있도록 구성
- 민주성 : 대표협의체 위원은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에 의해 임명하거나 위촉

나 위원회 구성 및 선출

- 시·군·구 사회복지 관련 주요 구성주체인 공공부문대표·민간부문대표·이용자부문대표 등으로 구성
 - 협의체 위원의 임명/위촉요건은 사회복지급여법 제41조에 상세하게 규정
 - * 예시) 대표-실무협의체 간 의사소통 및 연계 활성화 등을 위해 실무협의체 위원장을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위촉·운영
- 대표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여 구성
-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위원(민간)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 가능
 - * 민관협력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대부분의 지자체가 지자체 장과 위촉 위원이 공동 위원장체제로 운영 중

-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 41조제3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군·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함
- * 위촉 임기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동법 제41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위촉자격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을 경우, 지체없이 당연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하므로 잔여기간 동안 위원으로서 임기를 유지할 수 없음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제3항

-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제7항에 따른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1) 임명직(공공부문) 위원

- 임명직 대표협의체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해당 시·군·구청장이 통상 특정 직위를 지정하여 위원으로 임명
- 사회보장분야의 범주 확대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취지를 반영,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 관련기관(공공)의 관계자를 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
- *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사이의 긴밀한 의사소통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반드시 대표협의체 위원을 겸임하여 활동(예시 또는 권고사항)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민간)은 시·군·구와 읍·면·동 간 사업 추진 방향 조율 또는 정보공유 차원에서 시·군·구 협의체 위원을 겸임하여 활동하게 함으로써 네트워크의 효율성 제고
-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위촉요건에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 포함

**예시

(임명직 위원 예시) 자치구 행정국장, 경제재정국장, 생활복지국장, 도시환경국장, 보건소장 등 사회보장영역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

2) 위촉직(민간부문) 위원

- 민간부문 대표협의체 위원은 사회보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의 법인·단체·시설의 직능별 대표성을 가진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지자체의 장이 위촉

* 위원 위촉 시 공모 또는 관련법인·시설·단체 등의 추천 방식으로 위촉

예시

- 사회복지 관련 인적자원이 충분한 지역에서는 서비스 제공기관 중심으로 위원을 확보하고 부족한 지역의 경우에는 학계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대표위원을 구성할 수 있음
- 서비스 제공기관을 중심으로 대표협의체 위원을 선출한 경우에는 위원 해촉 및 사퇴 시 해당 기관의 대표자가 가급적 위원직을 승계하도록 함

3) 수요자(서비스 이용자)대표 위원

- 수요자(서비스 이용자)를 대표하는 대표협의체의 차기 대표위원은 지자체의 장이 현재 대표협의체 소속 단체의 추천 또는 공모 등을 통해 위촉하고 수요자의 입장을 고려할 수 있도록 포괄성의 원칙에 따라 구성
 - 수요자(서비스 이용자)대표 위원은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성
- 공모방식으로 위원을 위촉할 경우, 수요자(이용자)대표 위원 응모자가 부족할 경우에는 지역사회 내 관련기관·법인·시설·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요건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함

4) 사회복지 연계 영역

- 위의 해당 분야 외에 법령상 협의체 위원 위촉요건을 갖춘 자 중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람을 발굴하여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음
 - 보건복지 연계·협력을 통한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건소 방문간호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자살예방센터 등 보건분야 종사자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종사자, 통합사례관리사 등 복지분야 종사자를 협의체위원으로 최대한 영입

예시

공단 밀집지역의 고용분야 종사자, 이주민 관련 활동가,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문화·체육(여가)·교육분야 종사자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위촉하여 구성

5) 위원 임명·위촉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

- 시·군·구청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항에 따라 위원 임명 또는 위촉 전에 반드시 결격 사유 해당 여부를 조회·확인함
- * 시·도사회보장위원회 위원 결격사유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임명 또는 위촉 시에 준용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군·구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의 사회복지사업(이하 “사회복지사업”이라 한다)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거나 집행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결격사유 조희대상에 대한 유권해석

질의

읍·면·동 협의체 위원 위촉 시, 신원조회 여부

해석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목적, 기능, 위원 구성 등에 관한 사항과 함께 이와 구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는 내부기구로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같은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위촉의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은 협의체 위원 위촉 시 적용되는 사항으로 이를 협의체 내부기구인 실무협의체 또는 실무분과 위원 등에게 적용함은 법적 근거가 미비한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위원 위촉 시 결격사유 조항은 협의체 위원에 한하여 적용되며,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그 적용대상이라고 할 수 없음.

[결격사유 조회 업무처리요령 (2018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

1. 목적

- 국민의 행위능력이나 자격요건에 관련된 한정치산·금치산·파산선고, 후견등기사실 및 수형인 명표 등의 기록을 엄정하게 관리하여
- 국민이 각종 인·허가 등을 받거나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에 취임하고자 할 때 관련법령에서 자격요건을 규정한 경우 이를 신속·정확하게 조회·회보함으로써
- 관련민원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의 신뢰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용어의 정의

- 가. 결격사유조회 : 결격사유의 확인을 위하여 조회요청기관이 회보기관(등록기준지)에 결격사유 기록의 확인을 요청하는 것
- 나. 한정치산·금치산·파산선고사실 : 종전 민법* 제9조 내지 제14조에 의한 한정치산·금치산의 선고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의 선고
- * 민법(법률 제10429호, 2011.3.7.) 개정으로 2013.7.1.부터 후견등기제도가 도입되고 한정치산·금치산 제도는 폐지
- 다만, 민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법 시행 이전 이미 한정치산·금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은 5년간 종전 규정을 적용함
 - 따라서, 종전 한정치산·금치산자는 새로이 성년후견·한정후견 심판을 받은 때와 법 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8.7.1.부터 한정치산·금치산 선고 효력을 상실함
- 다. 후견등기사실 : 민법* 제9조 내지 제14조에 의한 성년후견·한정후견의 심판을 받고 후견등기부에 등록된 사실
- * 민법(법률 제10429호, 2011.3.7.) 개정으로 2013.7.1.부터 도입 시행

- 라. 수행사실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3년 이하의 징역·금고의 경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실, 법률 또는 판결에 의하여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중에 있는 사실
- 마. 결격사유기록 : 한정치산·금치산·파산선고사실, 수행사실, 후견등기사실이 기록된 사항
- 바. 조회요청기관 : 민원을 접수받아 처리하는 기관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결격사유의 확인이 필요한 기관
- 사. 회보기관(등록기준지) : 결격사유 조회결과를 회보하는 기관으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시·구·읍·면(출장소장을 포함)을 의미
- 아. 결격사유조회 회보 : 결격사유조회에 따라 회보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결격사유기록의 내용을 확인하여 조회요청기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는 것
- 자. 관련법령 : 결격사유조회가 필요한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과 대통령령을 의미

3. 결격사유조회 절차



○ 행정정보 공용이용으로 결격사유 유무(有無) 확인
 - 조회기관(민원접수·처리기관) 업무처리담당자는 행정전자서명(GPKI)를 이용하여 행정정보공용이용시스템(www.share.go.kr)을 이용하여 결격사유가 존재하는지를 우선 확인

가. 결격사유 유무에 따른 업무처리

- (1) 결격사유가 없는(無) 경우 :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에 결격사유 조회절차를 생략하고 결격사유 유무 확인결과를 근거로 업무처리
 - * 결격사유 유무 확인결과 출력 가능
- (2) 결격사유가 있는(有) 경우 :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에 결격사유 조회를 요청하여 회보결과를 확인하여 업무처리

* 조회기관(민원접수·처리기관) 담당자는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에 조회 요청 시 공문에 “결격사유 유무 확인 후 조회 요청함”을 명기

나. 결격사유조회 회보

- (1) 결격사유기록의 확인과 결격사유조회 회보는 가족관계등록부를 관리하는 회보기관(등록기준지)이 관장한다.
- (2) 결격사유기록의 확인은 [별표 1] 결격사유조회 확인 시 유의사항에 따라 확인한다.

- (3) 결격사유조회의 회보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 (4) 결격사유조회의 회보대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다. 결격사유기록의 관리

(1) 수형인명표 관리

- (가) 수형인명부는 검찰청으로부터 송부 받은 수형인명표를 그대로 편철하여 이를 수형인명부(원부)로 관리한다.
- (나) 수형인명부에 의한 수형자 접수대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검찰청으로부터 수형인명표를 송부 받으면 즉시 수형자 접수대장을 정리한 후 수형인명부에 편철하여야 한다. 수형자 접수대장은 수사 정리하여 수형자의 검색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 (다) 수형인명표가 전자정부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송부되어 전자적인 방법으로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형인명부와 수형자 접수대장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 **위원의 임기**

*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 및 민간 참여 다양화를 위하여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위원은 지역특성, 인적자원 분포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조례로 연임여부를 정하도록 위임

-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위원들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남은) 기간으로 함
- 위원 임기의 경우 인적자원·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 조례로 연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운영할 수 있음
-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함
- 겸직에 관한 유권해석(참고)

질의

市·道 지방의회의원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또는 위원장)으로서 겸직이 가능한지 여부

해석

「사회보장급여법」상 市·道 의원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또는 위원장)으로서 겸직 가능 여부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 위촉요건은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제3항에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금지대상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은 가지는 직을 포함하고 있는 바, 사실상 市·道 의원이 민간 위촉위원으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는 한 협의체 위원(또는 위원장)으로서 겸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라 공동위원장의 선출 및 임기

-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상당 수 지자체의 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선출되어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하고 있음.
- 지자체의 장(또는 지자체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과 민간부문의 위촉 위원을 함께 선출하여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토록 함

- ※ 민간부문 공동위원장은 민간 대표협의체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함
- ※ 지역사회보장 증진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보장기관(지자체 장)의 관심과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지자체의 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도록 권고
- ※ 공무원인 공동위원장이 결위된 경우는 그 직무대행자가 업무를 대행함

- 공동위원장의 사퇴·해촉 등의 결원 발생으로 인한 공동위원장의 후임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함
- 단독 위원장 운영에 관한 유권해석

질의

읍·면·동협의체 위원장을 단독(공공, 민간)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해석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읍·면·동장과 민간위원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바,

- 이는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의 취지를 고려하여 공동위원장을 선출할 경우 읍·면·동장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 다만, 법령상 위원장은 호선을 원칙으로 하고, 읍·면·동장을 포함한 공동위원장 선출도 임의규정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단독 위원장도 가능
- *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 관련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5조2항에 따라 동일 해석

마 회의 운영

- 위원장은 당해 대표협의체 회의 시 회의를 주재하는 의장이 됨
- * (공동위원장 체제) 민관협력의 취지를 고려, 위원장 간 역할 분담이 필요하고 위촉직 민간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권장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회의 개최 포함)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 대표협의체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최소 연 3회 이상 개최
-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음
 - * 회의 개최주기에 따른 정기/임시회의의 구분은 조례 규정사항
-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회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함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자 범위

- 「사회보장급여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기에 처한 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지자체(보장기관)에 알리고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구성시 사회보장 분야 종사자로 고려할 필요
- 1.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및 제35조의2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 3. 「의료법」 제2조 및 제3조의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
-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의 의료기사
-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응급구조사
- 6. 「소방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구조대 및 구급대의 대원
- 7.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 8.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 9.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10.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 11.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 12.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등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검임교사 등
- 1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 1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5.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1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7.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
19.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사목에 따른 보건소의 방문간호 업무 종사자
20.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1.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 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예시
*

〈대표협의체 구성〉

| | | |
|-----------|-------------------------|--|
| 임명직 위원 | 자치구 대표 | 자치단체장 또는 단체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선출직 포함) |
| |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사회복지·고용·주거담당국장, 보건소장 |
| | 실무협의체 | 실무협의체 위원장(임명 또는 위촉) |
| | 읍·면·동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위원장 대표 |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민간)네트워크 대표자 |
| 위촉직 위원 | 사회보장 이용시설 대표 | 종합사회복지관, 복지관, 자원봉사센터, 지역자활센터,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 지역사회에 소재하는 사회보장이용시설의 대표 |
| | 사회보장 생활(거주)시설 대표 | 노인요양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아동복지시설 등 사회보장 관련 유·무료 입소시설의대표 - 사회복지시설 운영안내 분류 참조 |
| | 연계영역 대표 | 의료, 정신보건, 경찰, 소방 등 관련 분야 |
| |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복지, 보건, 지역사회보장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보장 활동에 참여하는 종교단체, 사회복지협의회 대표, 주민조직 (부녀회, 노인회, 자원봉사회 등) 등 |
| |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관내 대학 및 연구, 교육기관 종사자 |
| | 그 밖에 사회보장 분야 대표 |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문화, 고용, 주거, 교육, 생활체육, (사회적)경제 관련 단체, 기업 등 지역사회보장 연계영역의 대표 |

○ 협의체 소속 전담직원은 대표협의체 심의 안건은 반드시 실무협의체의 사전 검토를 받도록 하고, 대표협의체가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원활한 의사소통 구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대표협의체에 보고 또는 논의하도록 함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자문사항(예시)〉

| 기 능 | 주 요 내 용 |
|-----------------------------------|---|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집행과정 모니터링 및 시행결과 평가 등 계획 추진에 관한 일련의 사항 |
|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필요한 지역 내 사회보장 관련 실태와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인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설계·실시·조사결과 등을 심의 - 지역사회보장의 실태와 계획 시행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점검할 수 있도록 지표 및 목표치 설정 |
|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 - 지역사회의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시·군·구 단위의 주요 사회보장급여 제공계획 등의 심의에 참여 예시 시·군·구의 기부자원이 특정 읍·면·동, 시설(기관), 대상자에게 편중되지 않고 균형적인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부금품 배분현황의 확인 및 조정 예시 개별법령에 따라 시·군·구 단위의 위원회 설치·운영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심의하는 국고보조사업 포함 예시 민관협력사업 추진·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조사, 자활 지원, 유사중복 사회보장 지침 등 |
|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 - 시·군·구 단위의 자체 사회보장 추진사업(지역고유사업) 등을 심의 예시 사회복지서비스 연계·협력방안, 읍·면·동 협의체 특화사업 추진·운영, 복지정책토론회, 복지담당자 직무역량교육 추진 등 |
|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 협의체의 효율적 운영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읍·면·동 단위 협의체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읍·면·동 협의체 구성·운영방향, 협의체의 읍·면·동 단위 협의체 지원방안, 대표/실무협의체와 읍·면·동 협의체 간 연계방안 등 |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협의체 설치목적 범위 내에서 연찬회, 정책토론회, 세미나, 워크숍, 교육사업 등 각종 역량강화 사업 추진 - 지역 내 잠재되어 있는 인적·물적 복지자원 발굴 등 |

바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 대표 협의체 심의사항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함

1) 위원회 구성

- 전문위원회 구성은 심의 사안에 따라 분야별로 구성할 수 있으며, 대표 협의체 위원을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 구성하고,
 - * 필요할 경우, 개별 법령에서 규정한 의사정족수(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당연직 위원, 관련분야 전문가, 소관부서의 장 등 외부 위원을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음
-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준용하여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규정

2) 운영절차(예시)

| 전문위원회 심의절차 | | |
|--------------|------------------------------|------------------------------------|
| 주체 | 역할 | 비고 |
| 소관부서 (안건) | 분야별 의제와 안건을 협의체에 심의 의뢰 | 담당공무원은 해당 전문위원회 심의 필요 안건을 작성, 제출 |
| 협의체 | 심의안건의 성격 및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위원회 구성 |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개최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 |
| 전문 위원회 | 사안별 안건 심의 | 안건 심의 |
| 협의체 | 심의결과 정리 및 소관부서에 결과 통보 | 심의 결과를 공문으로 소관부서로 통보 |

- 전문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음(예시)

| 위원회명 | 근거 | 기능 |
|---------------|---|--|
|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30조 ※강제규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구의 생활보장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시·군·구의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 시·군·구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 자활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margin-top: 10px; font-size: small;"> ※ 다만, 시·군·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제 20조 단서조항) </div> |

| 위원회명 | 근거 | 기능 |
|------------------|---|---|
| 시·군·구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 의료급여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7조 ※강제규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급여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심의 <p>※ 다만, 시·군·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로 하여금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제6조 단서조항)</p> |
| 지방보육 정책위원회 | 영유아보육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및 7조 ※강제규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보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p>※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2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제6조 단서조항)</p> |
| 지역아동 빈곤예방 위원회 |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강제규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 지원에 관한 사항 <p>※ 다만, 지역위원회는 그 기능의 수행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역위원회의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 (제10조 단서조항)</p> |
| 자활기관 협의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강제규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 |
| 지방장애인 복지위원회 |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 강제규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심의 |
|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 아동복지법 제12조 ※강제규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의 전염병 예방조치, 아동의 건강상담, 신체검사와 보건위생에 관한 지도, 아동의 영양관리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아동복지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할 경우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아동복지시설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등 |
| 노숙인 입소·퇴소 심사위원회 |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임의규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숙인 등의 입소·퇴소 결정 및 다른 사회복지시설로의 전원 등 필요한 조치 |
|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 청소년기본법 제11조 ※강제규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시책 심의 |

※ 개별 법령에 따라 시·군·구에 두는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위원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시·군·구의 조례로 그 위원회의 기능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신 수행 가능

2

실무협의체

(목적)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제4항)

가 구성의 원칙

- 포괄성 : 실무협의체 위원 구성은 해당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 주체를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구성
- 전문성 : 실무협의체 위원은 해당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 영역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실무자(현장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

나 위원의 구성 및 선출

- 실무협의체 위원은 포괄성 및 전문성의 원칙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지역사회 보장 주체들 중에서 해당 분야 종사자로 민주적 절차와 방법을 통해 선출하고 임명 또는 위촉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고,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임명 또는 위촉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하거나 위촉
 - 다만, 민관협력의 취지를 고려 위촉직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함이 바람직
- 그 밖에 실무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함

1) 임명직(공공부문 대표) 위원

- 실무협의체 위원 중 임명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를 고려하여 적정 범위내로 구성 (이해관계자 대표의 참여 균형성 유지)
 - 사회보장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사회복지, 보건 의료 그리고 사회보장(고용, 주거, 문화, 교육, 환경 등) 분야의 담당부서장 또는 해당분야 팀장을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임명
 - 그 외 사회보장 연계영역의 공공부문 실무협의체 위원은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추가로 임명할 수 있음

예시 *

실무협의체 위원으로서 관계부서장 참여 시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평가와 민관협력 사업 추진 시 위원의 참여도와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

2) 민간부문 위원

- 지역 내 사회보장 업무를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실무자 중에서 해당 기관 등의 추천을 받거나 공모를 통하여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위촉
 - 통상 민간부문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으로 역할을 함과 동시에 해당 분야의 실무 분과장으로서 소속 분과를 운영(권고사항)
- 민간부문 위원은 사회보장분야 이용·생활(거주)시설이나 사회복지·보건 의료·고용·주거·교육·문화·환경 등 관련 법인·시설·단체의 기관장(종사자) 또는 중간관리자로 구성

예시 *

실무협의체 민간 위원은 해당 영역의 실무분과장을 겸임하여야 함
- 실무분과 위원의 합의 또는 호선에 선출된 실무분과장과 실무협의체 위원이 달라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3) 기타 관련분야 영역

- 지역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사회보장 관련기관 간 원활한 연계·협력체계 운영을 위해 필요한 분야의 종사자를 관련분야 영역의 실무협의체 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성 가능
- 사회보장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익기관·단체·비영리민간단체 기관장 또는 중간관리자 등을 사회보장 해당 영역의 위원으로 위촉 가능

※ 고용, 주거, 교육, 문화, 환경, 체육, 관광, 경제 단체, 지역기반의 기업 등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과 관련된 영역의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음

예시 *

실무협의체 구성

- 사회복지·보건 등 사회보장업무 담당 소관업무(사회복지, 고용, 주거, 문화, 교육, 환경 등) 담당 팀장 등
 - 사회보장분야의 이용시설 및 생활(거주)시설의 기관장 또는 중간관리자
 - 보건, 고용, 주거, 교육, 문화, 환경 분야 등 관련 영역의 기관장 또는 중간관리자
 - 지역사회 내 관련 전문가로서 학계 및 연구기관 종사자
 - 공익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 공익단체(복지, 보건, 환경, 경제, 고용 등), 사회복지협의회 등의 중간관리자 등
 - 기타 :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사회보장 관련분야 종사자 등
- ※ 협의체 사무국은 실무협의체와 실무분과간의 긴밀한 의사소통 구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함

다.위원의 임기

-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
 - (위원의 경우) 인적자원이 부족할 경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군·구 조례로 연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운영할 수 있음
 -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함
- *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대표협의체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 가능 (권고사항)

라 회의 운영

- 위원장은 당해 실무협의체 회의 시 회의를 주재하는 등 의장으로서 역할 수행
- 실무협의체 운영(회의 개최 포함)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함
 - 정기회의는 연 6회 이상 개최 권고
- 위원장은 실무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또는 실무협의체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음
- 회의 운영은 대표 및 실무협의체 사례를 준용하여,
 -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회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예시 *

(회의 안건)

대표협의체의 심의/자문사항의 사전 검토와 대표협의체 또는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반드시 심의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이행·평가에 관한 사항, 시·군·구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주요 사업 논의, 시책개발 사업 개발 및 논의, 실무분과 및 읍·면·동지역 사회보장협의체 공동사업 조정·연계 논의, 시·군·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최 교육 및 워크숍, 행사 추진 사항 등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3

실무분과

가 실무분과 구성·운영의 목적

-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 강화 및 실무협의체의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실무분과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분과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음

나 위원의 구성

- 실무분과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간사(또는 총무) 1명을 포함하여 구성(권고사항)

실무분과 운영

- 분과장의 역할 : 분과회의, 분과공동사업 등 분과 운영 총괄
- 총무(간사)의 역할 : 분과 회의록 작성, 분과소속 위원의 연계 강화를 위해 분과장과 협력하여 분과 운영

☞ 실무분과 위원 구성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규정

1) 공공부문 실무위원(임명직)

-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고용·주거·교육·문화·환경 등 사회보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위원이 됨
- 사회보장 관련 공공기관 실무자는 해당기관의 인사에 의해 사회 보장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때부터 해당 분야의 실무분과 위원이 됨
- 해당 공공기관 인사나 업무분장에 의해 담당업무가 바뀌는 경우, 후임자가 분과위원이 되고 임기는 보직 기간과 같음

예시
*

보육팀장 또는 담당공무원-보육 또는 아동분과 실무분과 위원
노인팀장 또는 담당공무원-노인분과 실무분과 위원

2) 민간부문 분과위원(위촉직)

-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시설·단체 중에서 지역의 복지 욕구를 대변하는 종사자로 구성하고 현장에서 주민과 밀접하게 서비스를 제공 또는 연계하는 실무자(팀장급 또는 담당자)로 구성
 - 위원은 사회보장 영역의 관련기관(보건의료 관련기관, 사회복지 이용시설 및 생활시설, 고용·주거·교육·문화·환경 등)의 실무자(팀장급 또는 담당자)와 현장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
 - 지역사회보장 증진에 관심을 갖고 분과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속 기관 등의 추천 또는 공모 방식에 의해 해당 분과위원이 될 수 있음(조례 규정사항)

3) 기타 연계 영역

- 사회보장영역의 확대를 반영, 지원대상자에 대한 통합서비스 제공 또는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실무자(팀장급 또는 담당자)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할 수 있음

다 실무분과장의 선출 및 임기

(조례 규정사항, 대표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 선출과 임기 등을 준용)

- 실무분과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
 - *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방식을 준용
- 분과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고, 실무분과장은 실무협의체 위원을 겸임(권고)
 - * 위원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권자, 실무분과의 위상을 고려, 실무협의체 위원의 임기와 동일하게 2년으로 규정 바람직
- 사퇴, 해촉 등의 결원 발생으로 인한 위원장의 후임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함

라 실무분과 구성의 형태

- 실무분과의 구성 및 운영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의 원동력이 되는 기반을 제공하므로 지역특성 및 여건에 맞는 실무분과를 반드시 구성
- 구성형태는 지역특성 및 여건에 맞게 대상별, 지역별, 기능별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 가능
- 각 실무분과의 위원 수는 지역사정과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 실무협의체 내 논의를 거쳐 유동적으로 운영
- 행복e음의 취약계층 정보, 지역사회 인적자원망을 활용하여 고독사·학대·자살 등의 위험이 예상되는 위기가구 발굴에 관련 기관 간 협력 필요

1) 대상별 분과

- 지역의 영유아,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보장대상자의 특성과 욕구를 기반으로 한 실무분과를 구성
-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상별 분과 설치 운영 가능(다문화가족분과, 여성가족분과, 노인분과 등)

2) 지역별 분과

- 농어촌 등 사회보장분야의 인적·물적자원 부족으로 인하여 대상별 분과 운영이 비효율적일 경우에는 읍·면·동 또는 소생활권 단위의 분과 구성이 가능
- 산악권 도시, 도서지역을 포함한 지역 등 대상별, 기능별 분과의 구성이 어려울 경우, 소생활권 형태의 지역단위로 분과를 구성하여 운영 가능
 - *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 등으로 별도 실무분과를 구성·운영 가능

3) 기능별 분과

-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욕구와 기능에 맞게 다양한 형태의 분과 구성이 가능함

- 사회보장분야 확대영역을 반영, 소득보장, 보건의료, 고용·주거, 문화·체육, 복지 위기 가구 발굴, 지역사회통합돌봄, 통합사례관리, 자원동원·배분, 자살예방*, 사회적 경제, 마을 분과 등 구성 가능

* 특히 지역 내 빈곤 가구의 자살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자살예방 분과 설치 권고

○ 실무분과 구성 예시

| 대상별 | | | | | | | | | | | |
|----------------------|----------------------|--------------------------|--------------------------|----------------------|----------------------|----------------|-----------------|----------|-----------|----|---|
| 영유아 | 아동· 청소년 | 여성 | 청년 | 노인 (어르신) | 장애인 | - | - | | | | |
| 기능별 | | | | | | | | | | | |
| 소득 보장 | 보건 의료 | 고용·주거 (자활고용/ 주거환경) | 문화·체육 (문화환경/ 교육문화) | 복지 위기 가구 발굴 | 지역 사회 통합 돌봄 | 통합 사례 관리 | 자원 동원· 배분 | 자살 예방 | 사회적 경제 | 마을 | - |
| 지역별 | | | | | | | | | | | |
| 00동 지역사회보 장협의체 | 00동 지역사회보 장협의체 | 00동 지역사회보 장협의체 | 00동 지역사회보 장협의체 | - | - | - | - | - | - | - | - |

마 회의 운영(조례 규정사항, 실무협의체 회의운영 방식을 준용)

- 실무분과 회의는 실무분과장이 회의 주재를 하고, 공석 시 위원장이 지명(정)하는 자 또는 간사(총무 등)가 대신할 수 있음
- 실무분과 정기회의는 최소 6회 이상 개최
- 실무분과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분과장과 실무협의체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시에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음
- 분과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회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4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1) 추진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제5호 및 시행규칙 제7조(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추진 배경

-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읍·면·동 단위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살피고, 알리고, 보살피는 지역복지 공동체 조성을 위해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와 문제를 해결하는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성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통합적 복지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 국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구축한 기존의 민관협력체계를 보다 촘촘한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확대 개편

3) 위원회 구성 및 선출

- 읍·면·동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 10명 이상으로 지역특성에 맞게 구성·운영하도록 하한선을 규정
 - 다만, 지역여건에 따라 보다 촘촘하고 상시적인 인적자원망체계 구축·운영을 위해 위원 구성 다양화 및 위원 수 확대 필요
- 읍·면·동협의체 위원 구성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의거하여 구성
- 읍·면·동협의체 위원 구성규모 및 내용
 -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등 지역사회 여건 및 사회보장 환경에 따라 지자체별로 위원 수를 탄력적으로 운영

- 협의체 위원의 구성 성별 고려 필요
 - *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에 따라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 협의체 활성화와 운영 효과성 제고를 위해 가급적 다양한 배경을 가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
 - * 통(이)·반장 만으로 구성(X), 특정 몇몇 단체원으로만 구성(X), 사회복지 종사자만으로 구성(X)
 - **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부녀회장, 주민자치회 위원, 상가번영회 회원, 종교기관 관계자, 전문인력(의료인, 기술·기능인) 등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여 네트워크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모니터링에 협력을 얻기 위해 “우체국”* 관계자, 교육복지 관계자 등 최대한 영입
 - * 복지부-우정사업본부 간 사각지대 발굴 등 협조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15.1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장·면장·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장·면장·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 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5.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6.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 읍·면·동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읍장·면장·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공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음.
 - 부위원장은 지자체 조례에 규정할 사항이나, 민관협력의 취지를 고려, 민간위원 중에서 가급적 선출(권고/예시사항)
 - 읍·면·동 협의체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은 읍·면·동 협의체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읍·면·동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원활한 의사소통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 * 읍·면·동 위원장이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 발의(정부안)
- 시·군·구청장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간사 등) 및 운영비(회의참석 수당 또는 급식비 등)를 지원할 수 있음(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제5항)
- 읍·면·동 협의체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안건 및 현황을 보고, 서기는 읍·면·동 협의체의 회의록을 기록·작성, 회계처리, 사업계획 및 관련 서류 작성 등 협의체 운영 업무를 지원

예시

읍·면·동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읍·면·동 주민센터의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담당직원으로 함(필요시 협의체 총무 등 주민도 간사 역할 수행 가능)

4) 위원의 임기 및 해촉

- 위원(위원장 포함)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함
- 임기 중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음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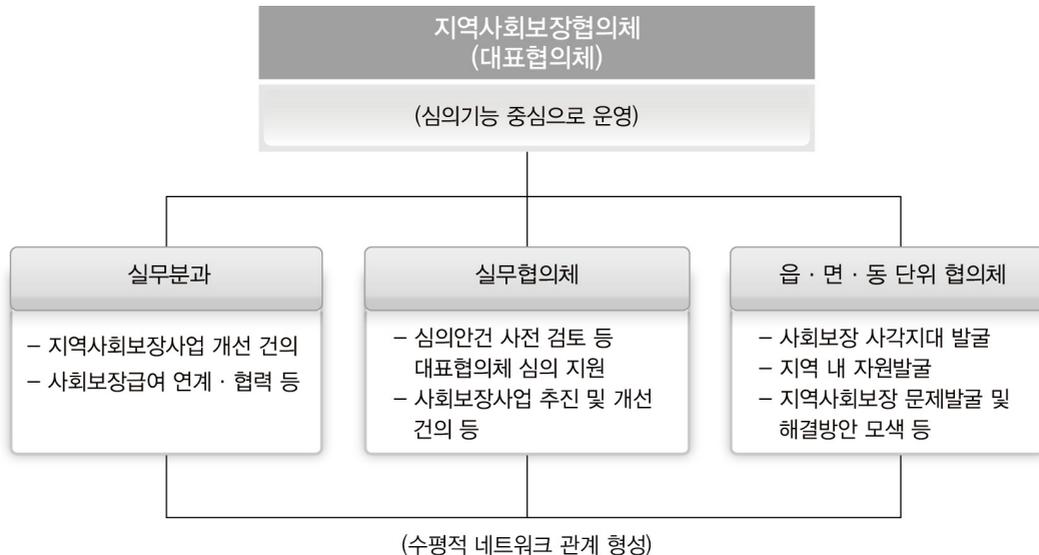
시·군·구청장은 읍·면·동 협의체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읍·면·동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지원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읍·면·동 협의체 위원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읍·면·동 협의체 조직

- 조직체계는 지역 상황에 맞게 복지사각지대 발굴, 자원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단위 분과(발굴조사팀, 나눔지원팀) 또는 운영위원 등으로 구성 가능(조례 또는 운영세칙 규정사항)
-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의 관계
 - 대표협의체-실무협의체(실무분과 포함)-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계는 수평적 네트워크 형성이 바람직
 -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또는 실무분과)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거나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들로 구성된 실무분과의 대표를 대표협의체에 참여하도록 하여 시·군·구-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 의사소통 구조 확립
 - 시·군·구 단위에서 운영되는 대표협의체(실무협의체, 실무분과 포함)는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읍·면·동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 및 조기 정착을 위해 교육·훈련, 모니터링, 컨설팅 등 지원
 -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지역 실무분과를 조직·운영함으로써 대표 또는 실무협의체와 정보 공유 및 사업 연계·협력기반 마련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분과 포함), 읍·면·동 협의체 간 관계(예시)〉



6) 회의운영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되, 회의개최 주기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지자체의 조례 또는 운영세칙으로 규정할 수 있음
 - 민·관의 자율적 협력을 최대한 활성화 하도록 공공의 일방적인 주도와 개입은 가급적 지양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회의를 소집
 -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회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전자우편 또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대신 가능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예시 *

읍·면·동 협의체 주요 논의 안건

읍·면·동 협의체 운영세칙의 마련 및 변경, 위원장 선출, 복지대상자 지원방안 및 지원 결정, 복지대상자 및 지역자원 발굴을 위한 조사 사항, 읍·면·동협의체별 특화사업 기획 및 운영사항, 그 외 읍·면·동 내 복지관련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

- 모든 회의에 대하여 회의 참석자 및 안건, 주요결정내용 기록·보관하고 회의록은 위원들이나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
- 위원장 주재로 진행(공동위원장일 경우, 민간인 주재), 읍·면·동 주민센터는 회의 개최 장소를 제공하는데 최대한 협조하고 필요시 회의록 작성 및 보관·공개 등 운영 지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부기구 간 역할 구분(예시)]

| 기능구분 | 주요내용 | 대표협의체 |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포함) | 읍·면·동 협의체 |
|----------------------------------|--|---|--|-----------|
| 지역사회 보장 정책 및 사업 심의 | 상위계획 | 심의·자문권 | | |
| | 지역 사회 보장급여 제공 및 사업계획 심의/자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지역 내 지역사회 보장 증진을 위한 사회 보장급여 제공 또는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실무협의체로 부터 안건으로 상정된 제반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무분과를 통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 사회보장 대상자별, 사업 별로 사례 회의를 통해 조사·연구 또는 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협력 으로 실무협의체 업무 수행을 지원(실무분과) | |
|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 시행, 평가 | 기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보장 수요의 측정, 목표 및 추진전략 - 지역사회보장의 목표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 (이하 “지역사회보장지표” 라 한다)의 설정 및 목표 - 지역사회보장의 분야별 추진전략, 중점 추진사업 및 연계협력 방안 -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의 조직과 운영 -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 - 지역사회보장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등(법령사항) | 좌 동 | |
| | 지역사회 보장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 사회보장 관련 실태, 지역주민의 사회 보장에 관한 인식 등에 관한 사항의 조사설계· 실시 및 조사결과 처리 - 지역주민,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시설·단체,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 수렴 사항 - 시·군·구청장 또는 실무 협의체 위원장이 지역 사회 특성상 계획수립의 | 좌 동 | |

II

| 기능구분 | 주요내용 | 대표협의체 |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포함) | 읍·면·동 협의체 |
|------------------------------|---|---|---|--|
| | |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 |
| 지역사회 보장조사 | 지역사회 보장조사 | 지역사회주민의 사회보장 욕구 및 자원조사 전반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보장조사 설계· 조사실시·조사결과 처리 등을 실질적으로 수행 | - |
| | 사업결정 협의 | 사회보장급여 간 연계 조정 및 개선 | 건의 | 건의 |
| | 시행결과 평가 | -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과정의 적정성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지역사회보장계획(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의 시행 결과에 대한 평가 | - 분야별/기능별 실행과정 점검 및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실시 | 건의 |
|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 | 주기능 | 민관 또는 사회보장 관련기관·법인·시설·단체 간 의사소통 채널의 다양화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협의된 사업의 시행에 대한 모니터링 | | |
| | 통합 사례관리 사업 지원 | | - 사회보장 대상자별 지원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총괄 - 사회보장 대상자별 지원 계획 수립·시행과정 모 니터링 및 서비스 제공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 - 지원대상자별 서비스제공 계획 수립(읍·면·동 사회 복지담당공무원 역할에 해당함) 및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의 적정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
| | 사회보장 지원 대상자에 대한 통합 서비스 제공 | - 사회보장 분야 서비스 연계·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 지역내 사회보장 분야 연계 협력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 또는 협의체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 - 사회복지, 보건 의료 및 관련영역 등 사회보장 급여 연계·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 사회보장 분야별 정보 공유 및 안건 검토 - 사회보장 분야별 욕구 파악 및 서비스 연계 - 사회보장 분야별 관련 기관·법인·시설·단체 간 공동 사업의 추진 및 운영 | - 지역사회보장분야 관련 기관·법인·시설·단체 간 연계·협력 및 복지 자원 발굴에 관한 사항 |
| | 기관 간 연계 및 조직화사업 | - 사회보장 관련기관 등의 연계 협력을 통한 자원 발굴 방안 논의 | - 관련영역 기관 등의 역할 분담 조정 | - 지역내 관련 기관 간 연계를 통한 서비스 제공 |

| 기능구분 | 주요내용 | 대표협의체 |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포함) | 읍·면·동 협의체 |
|--------------------|---|---|--|-----------|
| 사회복지 법인이사 추천 | 본 지침의 73-79쪽 내용을 참고,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및 지자체의 업무처리지침으로 정함 | | | |
| 기타 | 그 밖의 지역사회 보장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 또는 협의체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실무협의체장이 부의한 사항 | 그 밖의 지역사회 보장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읍·면·동 단위 협의체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 |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 표준조례안

○ 중점 검토기준

- 협의체가 사회복지보장 관련 개별 법령에 따라 시·군·구에 두는 위원회의 심의·자문기능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지 여부는,
 -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통합 대상인 각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지,
 -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이 통합 대상 각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 협의체의 심의·자문기능과 관련, 개별 기금 관련 조례에 설치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심의할 수 없음
- 법령에 근거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사항에 개별 조례 또는 지침에 근거한 자문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포함할 수 없음
- 법령 규정사항을 조례에 다시 규정하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는 중복규정으로서 입법 체계나 입법경제적으로 불필요
-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조례내용을 구성(위원 구성 시 당연직 위원은 위임범위를 위반한 사례에 해당)
- 위원장(실무분과장) 및 부위원장(총무)의 일반적인 직무 범위, 업무 분장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규정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6항에 따라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법 제4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3. 「의료급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4.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 지방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협의체의 위원이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법률 등에서 사회보장 관련 심의·자문을 위하여 시·군·구에 관련 위원회를 두도록 하면서 다른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건에 적합한 경우로 한정한다) 위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로 추가할 수 있음]

제3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7항에 따라 협의체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전문위원회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예시함)

1. 생활보장전문위원회: 제2조제○호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위원회
2. 사회공헌전문위원회: 제2조제○호 및 제○호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위원회
3. 노인복지전문위원회: 제2조제○호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위원회

(※ 전문위원회의 구성 방법을 다음과 같이 예시함)

② (예시 1) 전문위원회는 협의체의 위원 중에서 전문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예시 2)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①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협의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또는 ② 위원 중 적어도 3분의 2는 사회보장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전문위원회는 심의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협의체에 상정하여 처리한다.

제4조(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제41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검토한다.

1. 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② 실무협의체에 부위원장을 둘 수 있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 중 호선한 1명과 위촉위원 중 호선한 1명으로 한다.

제5조(실무분과의 구성 및 운영) ①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실무분과(이하 “실무분과”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실무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5.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②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지역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실무분과의 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지원 요청) 법 제41조제6항에 따른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동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체에 전문가 자문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공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협의체의 위원장이 협의체 또는 실무협의체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 경우 그 위원의 명단을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면·동협의체(이하 “각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협의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시·군·구의 사정에 따라 필요한 사유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음)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협의체의 위원장은 각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 시·군·구의 사정에 따라 필요한 사유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음)

제10조(회의) ① 각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집한다.

1. 협의체: 연 4회 이상
2. 실무협의체, 읍·면·동협의체 및 실무분과: 연 6회 이상

② 전문위원회 및 실무분과의 회의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각협의체, 전문위원회 및 실무분과(이하 “각협의체등”이라 한다)가 심의·자문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공청회 등의 개최) 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각협의체등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또는)

제14조(운영세칙) 각협의체등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II

PART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주요 기능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 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 나.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 다. 시·군·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 라. 시·군·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 마.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바.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주요 기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 주요 기능 | 내 용 |
|-------------------|--|
| 협치(governance) 기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과정·평가 등 지역사회보장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심의·자문 |
| 연계(network) 기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 강화 |
| 통합(integrate) 기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의체 내 각 분과 간 통합 및 조정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체계 지원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의 보건복지 뿐만 아니라 고용·주거·교육·문화·환경 등 다양한 영역과 연계 |

III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1)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1) 추진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6조
- 제4기(2019~2022)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안내(보건복지부)

2) 추진 목적

- 지역주민 욕구·자원 등 복지환경을 고려,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사회보장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는 지역 단위의 사회보장계획 수립

3)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종류

| 구분 | 계획의 종류 | |
|-------|-----------------------------|---|
| 수립주체별 | ① 시·도 지역사회보장계획 | |
| | ②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 | |
| 계획수준별 | ① 지역사회보장계획 (중장기계획, 4년주기) |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욕구와 지역 내 복지자원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실정에 부합하도록 수립하는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4년 단위의 계획 • 1기: 2007년~2010년 • 2기: 2011년~2014년 • 3기: 2015년~2018년 • 4기: 2019년~2022년 |
| | ② 연차별시행계획 (1년주기) | 중장기 계획에 따른 1년 단위의 연차별 시행계획 |

4)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의 기본 절차

| 구분 | 주요 내용 |
|-------------------------------|---|
| (1) 계획준비 단계 - 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 예산 확보 및 활용계획 등을 총괄하여, 계획 수립을 준비함 계획 수립 과정의 전반적 기획은 사회보장위원회(시·도)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시·군·구)를 중심으로 지역 주체들이 논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계획 수립 주체 간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고 시·도 및 시·군·구의 지원 방향, 논의 방식과 절차, 전문가의 참여 범주 등을 결정함 특히 사회보장위원회·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지자체 담당부서 중심으로 자체 계획을 수립하되, 지역사회보장조사 등은 전문연구기관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함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계획(안)의 작성을 담당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TF팀’ (이하 ‘계획수립 TF팀’)을 구성·운영함 |
| (2) 지역분석 단계 - 지역사회보장 조사 실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욕구와 활용 가능한 자원을 파악하는 지역의 사회보장 조사단계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과정이므로, 지역의 전문연구기관이나 내·외부 전문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시·도 및 시·군·구는 이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 시·도, 시·군·구는 지역 관련하여 기 확보된 기초자료를 제공함 지역사회보장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조사 과정을 협조지원함(조사원 역할, 공문 발송 등). <div style="background-color: #f0f0f0; padding: 10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p> <p>§ 법 제35조(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p> <p>①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지역 내 사회보장 관련 실태와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인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이하 “지역사회보장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 시 지역사회보장조사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p> <p>§ 시행령 제21조(지역사회보장조사의 시기·방법 등)</p> <p>② 지역사회보장조사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전부나 일부가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별, 연령, 가족사항 등 지역주민 또는 가구의 일반 특성에 관한 사항 2. 소득, 재산, 취업 등 지역주민 또는 가구의 경제활동 및 상태에 관한 사항 3. 주거, 교육, 건강, 돌봄 등 지역주민 또는 가구의 생활여건 및 사회보장 급여 수급실태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지역주민의 인식과 욕구에 관한 사항 5.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사람의 사회보장급여 이용 경험, 인지도 및 만족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div> |

III

| 구분 | 주요 내용 |
|--|--|
| | <p>③ 지역사회보장조사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통계자료조사, 문헌조사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p> <p>④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조사를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기관·법인·단체·시설에 의뢰할 수 있다.</p> |
| <p>(3) 계획 작성 단계 - 지역사회보장(계획안) 마련</p> | <p>• 계획(안)의 작성은 계획수립 TF팀을 중심으로 진행하며, 이 단계의 중요 사항은 다음과 같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목표와 추진전략 결정 - 추진전략, 우선순위, 복지자원(예산), 복지욕구와의 적절한 비교분석을 통해서 집중해야 할 중점추진사업 선정 - 세부사업의 선정과 세부사업의 중기 및 연차별 계획 수립 - 행정·재정계획 수립 <p style="text-align: center;">【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p> <p>§ 법 제36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p> <p>①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사회보장 수요의 측정, 목표 및 추진전략 2. 지역사회보장의 목표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이하 "지역사회보장지표"라 한다)의 설정 및 목표 3. 지역사회보장의 분야별 추진전략, 중점 추진사업 및 연계협력 방안 4.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의 조직과 운영 5.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 6. 지역사회보장에 필요한 자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7. 지역사회보장에 관련한 통계 수집 및 관리 방안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②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군·구의 사회보장이 균형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표 및 전략 2.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설정 및 목표 3. 시·군·구에서 사회보장급여가 효과적으로 이용 및 제공될 수 있는 기반 구축 방안 4. 시·군·구 사회보장급여 담당 인력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 방안 5.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 및 관리 방안 6.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 추진에 필요한 사항 <p>③ 특별자치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항 각 호의 사항 2. 사회보장급여가 효과적으로 이용 및 제공될 수 있는 기반 구축 방안 3. 사회보장급여 담당 인력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 방안 4.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 추진에 필요한 사항 |

| 구분 | 주요 내용 |
|----------------------------------|--|
| (4) 의견수렴 단계 - 의견 수렴 (공고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지역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함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공고절차 뿐만 아니라 공청회, 간담회, 공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 지역의 의견 수렴은 계획의 홍보와 지역주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며,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계획의 실행단계에서 지역주민의 참여를 활성화 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함 <p style="text-align: center;">【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p> <p>법 제35조(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수립하고, ...제출하여야 한다.</p> <p>시행령 제20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절차 및 제출시기)</p> <p>②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20일 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
| 5) 계획확정 단계 - 심의·확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보장위원회(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시·군·구)에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심의하고 계획안을 확정하는 과정을 거침. <p style="text-align: center;">【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p> <p>법 제35조(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군·구 의회의 보고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⑤ 시·도지사는...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와 해당 시·도 의회의 보고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
| 6) 제출 단계 - 보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의를 거쳐 확정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함으로써 향후 계획의 내용과 예산 편성의 연계성을 제고함 최종 확정된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후, 시·도지사에게 제출함 또한 최종 확정된 시·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시·도지사에게 보고 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함 <p style="text-align: center;">【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p> <p>법 제35조(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군·구 의회의 보고*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 보고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은 제외</p> |

| 구분 | 주요 내용 |
|-----------------------------------|--|
| | <p>⑤ 시·도지사는...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와 해당 시·도 의회의 보고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
| <p>7) 권고·조정 사항 반영 - 최종 단계</p> | <p>•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시한 권고·조정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논의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하고 계획안을 수정하여 이를 확정함</p> <p style="text-align: center;">【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p> <p>법 제35조(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p> <p>⑧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p> <p>시행령 제22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조정 권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3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이하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 한다)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이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또는 국가 또는 시·도의 사회보장정책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과 주민생활권역 간의 차이를 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데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5. 지방자치단체 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 6.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 지역사회보장조사 과정

| 절 차 | 내 용 | 비 고 |
|--------------------------|---|--------------------|
| 조사지침 마련 (복지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보장조사 지침 및 설문내용 마련 | |
| 지역사회보장 조사 실시 (지자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보장조사(수요조사) - 4년마다 실시, 필요시 수시로 실시할 수 있음 | 시행령 제21조 제1항 |
| 조사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별, 연령, 가족사항 등 지역주민 또는 가구의 일반 특성에 관한 사항 2. 소득, 재산, 취업 등 지역주민 또는 가구의 경제활동 및 상태에 관한 사항 3. 주거, 교육, 건강, 돌봄 등 지역주민 또는 가구의 생활여건 및 사회보장 급여 수급실태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지역주민의 인식과 욕구에 관한 사항 5.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사람의 사회보장급여 이용 경험, 인지도 및 만족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시행령 제21조 제2항 |
| 조사 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방법은 표본조사를 실시하되, 통계자료조사, 문헌조사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 할 수 있음 | 시행령 제21조 제3항 |
| 조사결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보장계획 또는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시 계획 내용에 반영 | 법제35조 제7항 |

III

(2)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점검 모니터링

1) 추진 근거

- 사회복지급여법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따라 협의체 심의/자문사항의 하나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
- 「제4기(2015~2018)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시·군·구 2018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에 의한 평가계획(보건복지부)
- 「제4기(2019~2022)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안내」(보건복지부) 제6절 지역사회보장 계획 운영 점검 및 평가(모니터링 추진방안 세부내용 참고)

모니터링

연차별 투입과 추진상황을 계획 단계에서 설정된 것과 비교하여 당초의 의도대로 집행되었는지를 판단, 당초 의도한 결과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 그 원인을 찾아 수정·보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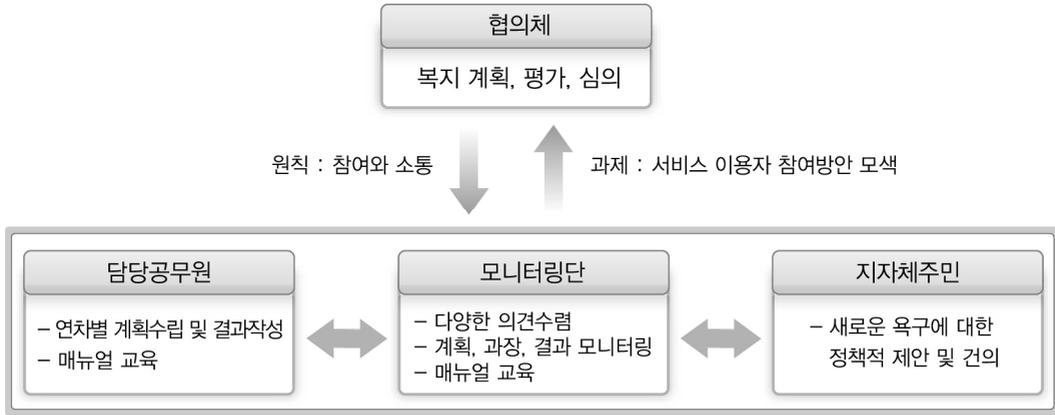
2) 추진 목적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행과정에서 계획의 구성 또는 방법을 수정·보완할 사유가 발생여부를 확인하고, 관련된 필요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실시
 - 집행과정에서 계획 내용 또는 방법의 수정(변경) 근거 확보
 - 목표 설정과 구성, 운영방법, 절차 확인
-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추진현황 점검 및 평가결과를 반영한 후속조치를 통해 시행결과의 목표달성도 제고

3) 수행 과정



4)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방안



자료: 증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료에서 재구성

5) 모니터링 내용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이후 전체 계획의 수행결과를 확인하는 작업으로서 당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 지 점검하는 과정
 - 계획의 일정준수, 관련부서의 업무추진 지원정도, 민간자원 개발 및 동원 노력, 예산의 확보 및 집행 등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추진상황 검토 등
- 가급적 다음연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시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모니터링 결과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

〈단계별 모니터링 수행 내용〉

| 구분 | 이행점검 모니터링 | 결과확인 모니터링 | |
|-----------------|--|--|---|
| 모니터링 수행 | 주최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력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부서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력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부서 담당자까지 지정하며 향후 모니터링 보고를 진행 |
| | 협력부서 | 분야별 사업의 제안과 수행에 협력할 부서명 | 분야별 사업의 제안과 수행에 협력할 부서명 |
| | 분야 모니터링 위원 | 모니터링단 인력풀로 구성된 위원의 성명을 기재 | 모니터링단 인력풀로 구성된 위원의 성명을 기재 |
| 모니터링 방법 (연계 방법) | 계획안과 각각의 사업을 모니터링 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 계획안과 각각의 사업을 모니터링 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 |
| 모니터링 내용 | 계획 대비 이행정도(일정, 사업규모, 방법 등), 예산 등 자원동원의 적절성, 사업수행상의 애로사항 및 장애요인, 성과 달성을 위한 개선사항 등을 제시 | 자원 활용 결과, 사업의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 등 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결과 점검 계획의 합리성, 예산확보방안, 사업이행 | |

| 구분 | 이행점검 모니터링 | 결과확인 모니터링 |
|-----------|---------------------------------------|---------------------------------------|
| | | 방법의 타당성 등 계획 자체의 수립 합리성을 증명하는 형태 기재 |
| 시기 | 모니터링 실시 시기(계획 수립 후 이행과정) | 모니터링 실시 시기(계획 시행 이후) |
| 예정(수행) 횟수 | 모니터링을 실시하고자 하는 횟수 기재 (구체적으로) | 모니터링을 실시하고자 하는 횟수 기재 (구체적으로) |
| 결과활용 | 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이후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 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이후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

(3)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

1) 추진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9조
-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의 평가계획, 평가 매뉴얼(보건복지부)

2) 추진 목적

- 지역의 특성과 욕구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맞추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책임성 강화 및 지역사회보장 질적 수준 제고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정과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정책정보 생산

3) 평가 분야

- 지역사회보장계획 내용의 충실성·시행과정의 적정성·시행결과의 목표달성도 등 4개 분야, 사회보장기본계획과의 연계성 등 17개 기준 적용 원칙
- 우수 지자체 선정 시 보건복지정책 현안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별도 기준을 추가 적용하여 선정

4) 평가 방법 및 절차

- 보건복지부는 시·도(광역자치단체) 평가, 시·도는 시·군·구(기초자치단체) 평가
 - 시·도와 시·군·구의 자체평가는 각 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자율 실시, 자체평가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상위단체의 평가는 미 실시
- 시행결과 평가 미흡 지자체 대상 지역사회보장계획 컨설팅 지원
- 우수 지자체·공무원 선정하여, 장관 표창 수여 및 특별지원금(포상금) 지급

- 평가절차(예시)

| 절 차 | 내 용 | 비고(예시) |
|----------------|--|--|
| 계획 수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차별 계획 시행결과 평가계획 수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자체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사무국) 계획 수립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위원장 결재 |
| 자체평가단구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체평가단 구성 (평가위원회 포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평가단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위원 실무분과 위원, 공무원 현장전문가 등 * 평가위원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가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위원 공무원 등 이해관계자 * 행정지원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연직 : 지자체 소관부서/협의체 사무국 |
| 자료수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를 위한 자료수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자체(소관부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
| 평가보고서 초안작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체평가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차별 계획 시행결과 평가보고서(안) 작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체평가단 : 연차별계획 시행 평가 결과보고서에 관련 논의 후 역할분담 현장전문가 : 연차별 계획 시행 평가 결과보고서 초안 작성 |
| 평가보고서 (안) 의견수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차별 계획 시행 결과 평가보고서(안) 의견수렴 및 보완 수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지원팀 : 연차별 계획 시행 평가 결과보고서 초안을 가지고 의견수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무협의체와 실무분과 의견수렴 * 자체평가단 : 추가의견에 대한 보완수정 작업 |
| 평가위원회 평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차별시행계획 시행 결과 평가 및 보고서 작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수정 보완된 연차별 계획 시행결과 평가보고서를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평가 평가결과에 따라 최종 보고서 작성 |
| 대표협의체 심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종평가결과보고서 대표협의체 심의 시·군·구 결과 통보(심의결과와 최종평가결과보고서) 시·군·구 : 시·도 제출(익년 2월 말까지) |

5) 모니터링 및 시행결과 평가 수행을 위한 전제 조건

-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과정의 적정성 확보 및 시행결과 평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전문가 활용 등을 위한 평가비용 계상 필요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연간 사업 추진계획에 반영, 매년 모니터링 및 시행결과 평가에 소요되는 실비 성격의 비용을 예산에 반영 조치

6) 평가결과 활용

- 평가결과의 환류 → 다음연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
- 우수사례를 발굴 → 전국적 공유·확산 → 지역사업·민관협력 활성화 도모
- 평가결과를 활용, 지역사회보장계획 부진 지자체에 대한 컨설팅 지원

나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1) 지역사회보장지표

1) 추진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6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 제45(지역사회보장의 균형발전)

2) 추진 목적

- 지역사회보장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지역별로 합리적인 목적 설정과 추진전략 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
- 지역별 사회보장 환경, 사회보장 증진 노력, 결과성과 등 대표할 수 있는 지표의 산출은 지역단위의 복지 실태 파악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

3) 지표체계의 구성

- (도입)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19~22) 수립 시 지표의 본격 적용을 위해 제3기(15~18) 중 ‘16년 연차별 시행계획 우선 도입하여 단계적 확대 추진
- 지역사회보장지표 체계를 구성하는 10개 영역 : 돌봄(아동), 돌봄(성인), 보호안전, 건강, 교육, 고용, 주거, 문화여가, 환경, 총괄(삶의 질 및 지역 인프라)

- 지역사회보장 환경 및 수급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 사회보장여건·투입·결과·성과 측면의 균형적인 지표 개발(총 223개)

4) 지표체계의 이해

- 지자체 단위 사회보장 수준의 파악이 가능한 지표(수준 지표)
 - 지표의 포괄성, 객관성, 일관성 확보
- 지자체를 포함한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 노력 파악이 가능한 지표(역량 지표)
 - 지표의 대표성(핵심 영역 및 정책), 지역 특성의 반영

| 수준 지표 | 역량 지표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의 상태(지역 전체, 지역 주민 개별 수준의 합)를 표현 • 현재 여건(여건 지표) 및 지자체 대응으로 인한 효과를 의미하는 성과(outcome) 지표 • ‘여건 지표’는 지역단위 총괄 여건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인구 관련 내용, 하드웨어 관련 내용, 직접적인 정책개입 대상이 아닌 영역 등 포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 관련 욕구에 대응하는 지역(지자체)의 노력과 실제 활동을 표현 • 투입(input) 지표, 산출(output) 지표 • ‘산출 지표’는 지자체 행위(action)에 의한 직접적 결과를, ‘성과 지표’는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정책 대상에게 나타나는 변화를 의미 • 지자체 행위 및 제도 운영에 따라 나타나는 산출이라도 장기간 소요되거나 여러 제도 및 영향 요인이 개입되는 경우는 성과 지표로 제시 |

- 핵심지표와 부가지표

| 핵심 지표 | 부가 지표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중요도가 높고 지역별 변화를 추적, 시계열적 측정의 필요성의 높은 주요 지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지표 외의 지표 |

5) 지표 현황

- (총괄) 2017년 정비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된 지표는 총 223개
 - 최종 지표 중 시·도 단위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 지표 23개
 - 최종 지표 중 생산되고 있는 지표 84개(시·군·구 단위 63개, 시·도 단위 21개)
 - 향후, 욕구조사로 생산 가능한 지표 24개, 지자체 자체 생산 가능한 지표 82개, 군발센터 추가지원 지표 18개, 지표 재정의*가 필요한 지표 36개, 별도조치 불필요한 지표 63개
- * 지표 재정의는 당분간 시·군·구 단위로 생산되기 어려운 지표를 말하며, 산식의 일부 수정에 의해 생산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지표, 폐기된 지표, 영역 간 중복 지표 등에 대해 삭제 및 전면 수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을 의미

(단위: 개)

| | 돌봄 (아동) | 돌봄 (성인) | 보호 안전 | 건강 | 교육 | 고용 | 주거 | 문화 여가 | 환경 | 총괄 (삶의 질 및 인프라) | 소계 |
|------------------------------|------------|------------|-----------|-----------|-----------|-----------------|-----------|-----------|-----------|--------------------------|------------|
| 지표수 | 25 | 20 | 19 | 29 | 20 | 22 | 24 | 22 | 15 | 27 | 223 |
| - 지표 중 시·도 기준 지표 | - | - | 8 | 3 | 5 | - | 2 | 3 | 2 | - | 23 |
| 생산 지표 | 6 | 3 | 7 | 20 | 10 | 6 | 9 | 7 | 8 | 8 | 84 |
| - 시·군·구 단위 생산 | 6 | 3 | 1 | 15 | 9 | 6 ¹⁾ | 2 | 5 | 8 | 8 | 63 |
| - 시·도 단위 생산 | - | - | 6 | 5 | 1 | - | 7 | 2 | - | - | 21 |
| 향후 조치 방향 | | | | | | | | | | | |
| - 욕구조사 실시 | 3 | 6 | - | 3 | - | - | 4 | 2 | 2 | 4 | 24 |
| - 지자체 자체 생산 | 9 | 10 | 11 | 4 | 4 | 12 | 9 | 6 | 2 | 15 | 82 |
| - 균발지원센터 지원(추가) (각 부처 협조) | 5 | 1 | 1 | 1 | 5 | 1 | 2 | 1 | 1 | - | 18 |
| - 지표 재정의 필요 | 2 | - | 7 | 3 | 3 | 5 | 6 | 8 | 2 | - | 36 |
| - 별도조치 불필요 | 6 | 3 | - | 18 | 8 | 4 | 3 | 5 | 8 | 8 | 63 |

주 : 1) 고용영역의 '고용률'과 '실업률' 지표의 경우 시·군 단위로 생산되고 있음.

○ 2017년 지역사회보장지표 산출 및 분석 현황

| 영역 | 번호 | 지표명 | 지표 산출 단위 | 욕구 조사 실시 | 자체 확보 지표 | 부처 협조 지표 | 최종 분석에 포함된 지표 |
|------------|----|-------------------------------|----------------|----------------|----------------|----------------|------------------------|
| 돌봄 (아동) | 1 | 공공형 어린이집 설치율 | 시·군·구 | | | | ○ |
| | 2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보수교육 및 역량교육 참여도 | 시·군·구 | | | | |
| | 3 |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아동 비율 | 시·군·구 | | | | ○ |
| | 4 | 영아(만 0~2세) 보육서비스 총족률 | 시·군·구 | | ○ | | |
| | 5 |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 시·군·구 | | | | ○ |
| | 6 |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의 정원 대비 현원 총족률 | 시·군·구 | | | ○ | |
| | 7 | 직장어린이집 설치율 | 시·군·구 | | | ○ | |
| | 8 | 시간제 및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이용률 | 시·군·구 | | ○ | | |
| | 9 | 등록발달장애아동 1인당 발달재활서비스 월 평균 지원액 | 시·군·구 | | ○ | | |
| | 10 | '나홀로 아동' 비율 | 시·군·구 | ○ | | | |

III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 영역 | 번호 | 지표명 | 지표 산출 단위 | 육구 조사 실시 | 자체 확보 지표 | 부처 협조 지표 | 최종 분석에 포함된 지표 | |
|----|---------|---|------------------------|----------|----------|----------|---------------|---|
| | 11 |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여부 | 시·군·구 | | | | ○ | |
| | 12 | 이용자 욕구맞춤형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률 | 시·군·구 | | ○ | | | |
| | 13 | 아동 양육가정의 양육부담 경감정도 체감수준 | 시·군·구 | ○ | | | | |
| | 14 | 보육교직원의 아동권리 관련 교육 이수율 | 시·군·구 | | | | | |
| | 15 | 보육교직원 1인당 처우개선비 및 근무환경 개선비 자체(추가) 지원 수준 | 시·군·구 | | ○ | | | |
| | 16 | 돌봄서비스 이용 만족도 | 시·군·구 | ○ | | | | |
| | 17 | 6세 미만 영유아 천 명당 설립주체별 어린이집 정원 | 시·군·구 | | | | ○ | |
| | 18 | 6세 미만 영유아 천 명당 특수어린이집 정원 | 시·군·구 | | | ○ | | |
| | 19 | 6세 미만 영유아 천 명당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아동 비율 | 시·군·구 | | | ○ | | |
| | 20 |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 비율 | 시·군·구 | | | ○ | | |
| | 21 | 초등돌봄교실 수 | 시·군·구 | | ○ | | | |
| | 22 | 초등돌봄교실 이용 아동 수 | 시·군·구 | | ○ | | | |
| | 23 | 등록 발달장애아동 백 명당 발달재활서비스 이용률 | 시·군·구 | | ○ | | | |
| | 24 | 아동 만 명당 지역아동센터 수 | 시·군·구 | | | | ○ | |
| | 25 | 아동 1인당 지역아동센터 운영 예산 | 시·군·구 | | ○ | | | |
| | 돌봄 (성인) | 1 | 등록장애인 1인당 장애인 접근성 보장예산 | 시·군·구 | | ○ | | |
| | | 2 | 장애인 이동권 보장률 | 시·군·구 | | | ○ | |
| | | 3 | 장애인 자립적 생활환경 만족률 | 시·군·구 | ○ | | | |
| | | 4 | 등록장애인 1인당 장애인복지 자체예산 | 시·군·구 | | ○ | | |
| | | 5 | 장애인 서비스 인지율 | 시·군·구 | ○ | | | |
| | | 6 | 등록장애인 천 명당 장애인복지 종사자 수 | 시·군·구 | | ○ | | |
| | | 7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시간 | 시·군·구 | | ○ | | |
| | | 8 | 장애인 자립지원서비스 만족률 | 시·군·구 | ○ | | | |
| | | 9 | 장애인 돌봄 육구 | 시·군·구 | | | | ○ |
| | | 10 | 장기요양기관 당 이용 노인 수 | 시·군·구 | | | | ○ |
| 11 | | 독거노인 보호율 | 시·군·구 | | ○ | | | |
| 12 | | 노인 자립적 생활환경 만족률 | 시·군·구 | ○ | | | | |
| 13 | | 노인돌봄 제공인력 1인당 이용 노인 수 | 시·군·구 | | ○ | | | |

| 영역 | 번호 | 지표명 | 지표 산출 단위 | 육구 조사 실시 | 자체 확보 지표 | 부처 협조 지표 | 최종 분석에 포함된 지표 |
|-------|----|---------------------------------|----------|----------|----------|----------|---------------|
| | 14 | 우수 장기요양기관 비율 | 시·군·구 | | ○ | | |
| | 15 | 노인 서비스 인지율 | 시·군·구 | ○ | | | |
| | 16 | 노인 1인당 노인돌봄 예산 | 시·군·구 | | ○ | | |
| | 17 | 노인돌봄 예산 집행률 | 시·군·구 | | ○ | | |
| | 18 | 노인돌봄서비스 이용률 | 시·군·구 | | ○ | | |
| | 19 | 노인돌봄서비스 만족률 | 시·군·구 | ○ | | | |
| | 20 | 노인 돌봄 육구 | 시·군·구 | | | | ○ |
| 보호 안전 | 1 | 1인당학대·폭력예방 및 피해자보호·지원예산 | 시·도 | | | ○ | |
| | 2 | 아동보호전문기관 당 아동 수 | 시·도 | | ○ | | ○(시·도) |
| | 3 | 노인보호전문기관 당 노인 수 | 시·도 | | ○ | | ○(시·도) |
| | 4 | 학대·폭력예방교육실적 | 시·도 | | ○ | | ○(시·도) |
| | 5 | 학대 폭력 신고 건수 | 시·군·구 | | | | |
| | 6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된 학교폭력 발생건수 | 시·군·구 | | ○ | | |
| | 7 | 학대아동발견율 | 시·도 | | ○ | | ○(시·도) |
| | 8 | 학대노인발견율 | 시·도 | | ○ | | ○(시·도) |
| | 9 | 가해자 프로그램 참여율 | 시·군·구 | | | | |
| | 10 | 아동학대 재학대 사례비율 | 시·도 | | ○ | | |
| | 11 | 노인학대 재학대 사례비율 | 시·도 | | ○ | | |
| | 12 | 1인당 안전 및 범죄예방 예산 | 시·군·구 | | | | |
| | 13 | 단위면적당 CCTV 설치 수 | 시·군·구 | | | | |
| | 14 | 인적재난 피해율 | 시·군·구 | | ○ | | |
| | 15 | 범죄율 | 시·군·구 | | | | ○(시·도) |
| | 16 |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 시·군·구 | | ○ | | |
| | 17 | 학대 예방활동 관련 조례 제정 여부 | 시·군·구 | | ○ | | |
| | 18 | 학대 예방활동 시설수 | 시·군·구 | | | | |
| | 19 | 피해자 및 요보호 대상자 보호시설 총 정원 | 시·군·구 | | | | |
| 건강 | 1 | 일반회계 중 보건의료 예산 비율 | 시·군·구 | | | | ○ |
| | 2 | 경제적 이유로 인한(치과진료포함) 필요의료서비스 미치료율 | 시·군·구 | | | | ○ |
| | 3 | (치과진료 포함) 필요의료서비스 미치료율 | 시·군·구 | | | | ○ |
| | 4 | 과부담 의료비 지출가구 비율 | 시·군·구 | | | | |

| 영역 | 번호 | 지표명 | 지표 산출 단위 | 육구 조사 실시 | 자체 확보 지표 | 부처 협조 지표 | 최종 분석에 포함된 지표 | |
|----|----|--------------------------|----------------------|----------|----------|----------|---------------|---|
| | 5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등록자 비율 | 시·군·구 | | | | | |
| | 6 | 주민 1인당 공공체육시설 면적 | 시·군·구 | | ○ | | | |
| | 7 | 주민 1만명당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수 | 시·군·구 | | ○ | | | |
| | 8 |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률 | 시·군·구 | | | | ○ | |
| | 9 |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 시·군·구 | | | | ○ | |
| | 10 | 일반건강검진수검률(1차) | 시·군·구 | | | | ○ | |
| | 11 | 생활체육 참여율 | 시·군·구 | ○ | | | | |
| | 12 |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 시·군·구 | | | | ○ | |
| | 13 | 근력 신체활동 실천율 | 시·군·구 | | | | ○ | |
| | 14 | 체육활동 참여시 지도자의 지도 경험 | 시·군·구 | ○ | | | | |
| | 15 | 기대여명(65세기대여명) | 시·군·구 | | | | | |
| | 16 | 노인1인당진료비 | 시·군·구 | | | ○ | | |
| | 17 |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 시·군·구 | | | | ○ | |
| | 18 | 만성질환자(고혈압, 당뇨유병)비율 | 시·군·구 | | | | ○ | |
| | 19 | 우울감 경험률 | 시·군·구 | | | | ○ | |
| | 20 | 지역응급의료기관 수 | 시·도 | | | | | |
| | 21 | 가임기여성 1만명당 산부인과 분만실 수 | 시·군·구 | | ○ | | | |
| | 22 | 접근성 문제로 인한 필요 의료서비스 미치료율 | 시·군·구 | | | | ○ | |
| | 23 | 주민 1만명당 배치된 응급구조사 수 | 시·도 | | | | | |
| | 24 | 인구 10만명당 응급의학전문의 수 | 시·도 | | | | | |
| | 25 | 의료서비스만족도 | 시·군·구 | ○ | | | | |
| | 26 | 건강보험(생계형)체납자비율 | 시·군·구 | | ○ | | | |
| | 27 | 인구 1만명당 병상 수 | 시·군·구 | | | | ○ | |
| | 28 | 인구 1만명당 의사 수 | 시·군·구 | | | | ○ | |
| | 29 | 환자거주지 기준 의료 이용률 | 시·군·구 | | | | ○ | |
| | 교육 | 1 | 평생교육예산(단위인구) | 시·군·구 | | ○ | | ○ |
| | | 2 |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인구 1만명당) | 시·군·구 | | | | ○ |
| | | 3 | 평생교육교·강사수 | 시·군·구 | | | | ○ |
| | | 4 | 평생교육사 수 | 시·도 | | ○ | | |
| 5 | | 평생학습 참여율 | 시·군·구 | | | | ○ | |
| 6 | | 유초중등 학생 1인당 교육예산 | 시·군·구 | | | | ○ | |
| 7 | | 교육환경 개선 예산 | 시·군·구 | | | | | |

| 영역 | 번호 | 지표명 | 지표 산출 단위 | 육구 조사 실시 | 자체 확보 지표 | 부처 협조 지표 | 최종 분석에 포함된 지표 | |
|----|----|---------------------------------------|------------------------------|----------|----------|----------|---------------|--|
| | 8 | 교사 1인당 학생 수 | 시·군·구 | | | | ○ | |
| | 9 | 과밀학급 비율 | 시·군·구 | | ○ | | | |
| | 10 | 특별교실 및 실내 체육시설 확보율 | 시·군·구 | | | | | |
| | 11 |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 | 시·군·구 | | | ○ | | |
| | 12 | 고등학생 학업중단율 | 시·군·구 | | | | ○ | |
| | 13 | 공립 특수교사 수 | 시·도 | | | ○ | | |
| | 14 | 공립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 | 시·도 | | | ○ | | |
| | 15 | 특수학교(급) 학급 당 학생법정정원 충족학급 비율 | 시·도 | | | ○ | | |
| | 16 | 취약계층1인당 교육지원예산(교육복지사업) | 시·군·구 | | ○ | | | |
| | 17 | 취약계층 교육지원 수혜자 비율 | 시·군·구 | | | | | |
| | 18 | 인구 1만명당 평생교육기관 수 | 시·군·구 | | | | ○ | |
| | 19 | 인구 1만명당 학교 수 | 시·군·구 | | | | ○ | |
| | 20 | 특수교육 대상자 수 | 시·도 | | | ○ | | |
| | 고용 | 1 | 등록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일자리 사업 지원액 | 시·군·구 | | ○ | | |
| | | 2 | 만 60세 이상 노인 1인당 노인 일자리사업 지원액 | 시·군·구 | | ○ | | |
| | | 3 | 지자체 내 직업상담사 배치 비율 | 시·군·구 | | ○ | | |
| | | 4 |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율 | 시·군·구 | | ○ | | |
| | | 5 |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율 | 시·군·구 | | ○ | | |
| | | 6 |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훈련 프로그램 참여율 | 시·군·구 | | ○ | | |
| | | 7 | 장애인취업률 | 시·군·구 | | ○ | | |
| 8 | | 재취업-창업 중장년인구의 해당인구 대비 비율 | 시·군·구 | | | | | |
| 9 | | 재취업 경력단절여성의 여성 근로연령인구 대비 비율 | 시·군·구 | | | | | |
| 10 | | 근로가능 저소득층 1인당 고용 창출 및 직업 능력 향상 사업 지원액 | 시·군·구 | | | | | |
| 11 | | 자활지원부문 종사 인력 수 | 시·군·구 | | ○ | | | |
| 12 | |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 포함) 참여율 | 시·군·구 | | ○ | | | |
| 13 | | 고용-복지 상호 연계서비스 실적 | 시·군·구 | | ○ | | | |
| 14 | | 자활사업참여수급자 및 차상위의 자활성공률 | 시·군·구 | | | ○ | | |
| 15 | | 신규 사회적기업 육성 실적률 | 시·군·구 | | | | ○ | |

III

지역 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 영역 | 번호 | 지표명 | 지표 산출 단위 | 육구 조사 실시 | 자체 확보 지표 | 부처 협조 지표 | 최종 분석에 포함된 지표 |
|----|----|--------------------------|----------------|----------|----------|----------|---------------|
| | 16 | 신규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증감율 | 시·군·구 | | | | ○ |
| | 17 | 사회적기업 고용률 | 시·군·구 | | ○ | | |
| | 18 | 사회적협동조합 고용률 | 시·군·구 | | ○ | | |
| | 19 | 사회적기업 평균 생존기간 | 시·군·구 | | | | ○ |
| | 20 | 고용률 | 시·군·구 (시·군) | | | | ○(시군) |
| | 21 | 실업률 | 시·군·구 (시·군) | | | | ○(시군) |
| | 22 | 장애인 의무고용률 | 시·군·구 | | | | ○ |
| 주거 | 1 | 주거급여의 수선유지급여 수급가구 수 | 시·군·구 | | ○ | | |
| | 2 |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 | 시·군·구 | ○ | | | |
| | 3 | 주택 이외의 거처가구 비율 | 시·군·구 | | | ○ | |
| | 4 | 유도주거기준 달성 가구 비율 | 시·군·구 | | | | |
| | 5 | 주거만족도 | 시·군·구 | ○ | | | |
| | 6 | 주거급여 지원 가구 비율 | 시·군·구 | | ○ | | |
| | 7 | 에너지바우처 지원 가구 수 | 시·군·구 | | ○ | | |
| | 8 |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율 | 시·군·구 | ○ | | | |
| | 9 | 에너지빈곤층 비율 | 시·군·구 | ○ | | | |
| | 10 | 매입·전세임대공급비율 | 시·도 | | | | |
| | 11 | 신규주택 중 공공임대주택 비율 | 시·군·구 | | ○ | | |
| | 12 | 주거복지센터 개소 수(비율) | 시·군·구 | | ○ | | |
| | 13 | 주거복지센터 주거복지사 수(비율) | 시·군·구 | | ○ | | |
| | 14 | 공공임대주택거주가구 비율 | 시·군·구 | | ○ | | |
| | 15 | (주거지)강제 이동 비율 | 시·군·구 | | | | |
| | 16 | 현재 주택에서의 거주기간 | 시·군·구 | | | | |
| | 17 | 주거급여의 수선유지급여 수급 장애인가구 비율 | 시·군·구 | | ○ | | |
| | 18 | 장애인 거주시설의 시설 및 환경 적절성 | 시·군·구 | | | | |
| | 19 | 공공임대주택 장애인 공급 비율 | 시·도 | | | | |
| | 20 |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설치율 | 시·군·구 | | | ○ | |
| | 21 | 인구1천명당 주택 수 | 시·군·구 | | | | ○ |
| | 22 | 주택보급률 | 시·군·구 | | | | ○ |

| 영역 | 번호 | 지표명 | 지표 산출 단위 | 육구 조사 실시 | 자체 확보 지표 | 부처 협조 지표 | 최종 분석에 포함된 지표 |
|----------|----|---------------------------|----------|----------|----------|----------|---------------|
| | 23 | 자가점유율 | 시·군·구 | | ○ | | |
| | 24 |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 | 시·군·구 | | | | |
| 문화 여가 | 1 | 단위인구(1인)당 문화체육 예산 | 시·군·구 | | | | ○ |
| | 2 | 취약계층1인당 문화복지 예산 | 시·군·구 | | | ○ | |
| | 3 | 단위인구당 문화예술교육강좌 개설 및 운영 건수 | 시·군·구 | | | | |
| | 4 | 문화예술 관람률 | 시·군·구 | ○ | | | |
| | 5 | (중복)생활체육 참여율 | 시·군·구 | | | | |
| | 6 | 문화예술 참여율 | 시·군·구 | ○ | | | |
| | 7 | 생활체육 동호인 비율 | 시·군·구 | | ○ | | |
| | 8 | 1인당 대출 도서 수 | 시·군·구 | | | | ○ |
| | 9 | 1인당 지역축제예산 | 시·군·구 | | ○ | | |
| | 10 | 1인당 도서관 운영 예산 | 시·군·구 | | | | ○ |
| | 11 | 기초자치단체 출연 지역문화진흥기관 설립 여부 | 시·군·구 | | | | |
| | 12 | 단위인구(10만명)당 문화기반시설 수 | 시·군·구 | | | | ○ |
| | 13 | 지역축제 운영 기간 | 시·군·구 | | | | |
| | 14 | 작은도서관 1관당 인구수 | 시·군·구 | | | | ○ |
| | 15 | 1인당 도서관 장서 수 | 시·도 | | | | |
| | 16 | 대표 공연장 및 전시장 가동일 수 | 시·군·구 | | | | |
| | 17 | (중복)1인당 도시공원 조성면적 | 시·군·구 | | | | |
| | 18 | 시각/청각 장애인대상 영화상영 횟수 | 시·도 | | | | |
| | 19 | 단위인구(10만명)당 영화 스크린 수 | 시·도 | | ○ | | |
| | 20 |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수 | 시·군·구 | | ○ | | |
| | 21 | 공공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 시·군·구 | | ○ | | |
| | 22 | 지역문화관련 조례제정 여부 | 시·군·구 | | ○ | | |
| 환경 | 1 | 주민 1인당 환경예산 | 시·군·구 | | | | ○ |
| | 2 | 환경예산 비중 | 시·군·구 | | | | ○ |
| | 3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률 | 시·군·구 | | ○ | | |
| | 4 | 환경오염사고 관련 대응매뉴얼 구비 | 시·군·구 | | ○ | | |
| | 5 | 상수도 보급률 | 시·군·구 | | | | ○ |
| | 6 | 하수도 보급률 | 시·군·구 | | | | ○ |

| 영역 | 번호 | 지표명 | 지표 산출 단위 | 육구 조사 실시 | 자체 확보 지표 | 부처 협조 지표 | 최종 분석에 포함된 지표 | |
|----|----|---|----------------------|----------|----------|----------|---------------|---|
| | 7 | 대기오염도 | 시·군·구 | | | | | |
| | 8 | 환경소음도 | 시·군·구 | | | | | |
| | 9 | 환경성 질환자 수 | 시·군·구 | | | ○ | | |
| | 10 | 환경에 대한 주관적 평가 | 시·군·구 | ○ | | | | |
| | 11 | 주민 1인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 시·군·구 | | | | ○ | |
| | 12 | 도시지역 인구1만명당 도시공원 수 | 시·군·구 | | | | ○ | |
| | 13 | 녹지 환경에 대한 주관적 평가 | 시·군·구 | ○ | | | | |
| | 14 | 주민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 시·군·구 | | | | ○ | |
| | 15 | 주민 1인당 녹지 조성면적 | 시·군·구 | | | | ○ | |
| | 총괄 | 1 | 저소득층 1인당 지자체 자체사업 예산 | 시·군·구 | | ○ | | |
| | | 2 | 신규 기초보장수급자 발굴 실적 | 시·군·구 | | ○ | | |
| | | 3 | 근로연령층 기초보장수급자 감소율 | 시·군·구 | | | | ○ |
| | | 4 | 희망키움통장 가입률 | 시·군·구 | | ○ | | |
| | | 5 | 빈곤갭 | 시·군·구 | ○ | | | |
| | | 6 | 빈곤율 | 시·군·구 | ○ | | | |
| 7 | | 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 1인당 복지수급자 수 | 시·군·구 | | ○ | | | |
| 8 | | 인구 1인당 사회보장분야 지자체 자체사업 예산 비중(2017년은 '1인당 사회복지예산'으로 임시 대체) | 시·군·구 | | | | ○ | |
| 9 | |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산집행률 | 시·군·구 | | ○ | | | |
| 10 | | 복지담당공무원 교육프로그램 참가율 | 시·군·구 | | ○ | | | |
| 11 | | 통합사례관리 수행 실적 | 시·군·구 | | ○ | | | |
| 12 | | 민관협력 통합사례관리 수행 실적 | 시·군·구 | | ○ | | | |
| 13 | | 맞춤형 서비스 상담(방문상담 및 초기상담) 실적 | 시·군·구 | | ○ | | | |
| 14 | |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률 | 시·군·구 | | ○ | | | |
| 15 | | 주민의 삶의 질 | 시·군·구 | ○ | | | | |
| 16 | | 주관적 사회의 질 | 시·군·구 | ○ | | | | |
| 17 |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노력도 | 시·군·구 | | ○ | | | |
| 18 | | 지역복지공동체 활동 지원예산 | 시·군·구 | | ○ | | | |
| 19 | | 지역복지공동체 육성 지원 | 시·군·구 | | ○ | | | |
| 20 |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실적 | 시·군·구 | | ○ | | | |

| 영역 | 번호 | 지표명 | 지표 산출 단위 | 요구 조사 실시 | 자체 확보 지표 | 부처 협조 지표 | 최종 분석에 포함된 지표 |
|----|----|-------------------------|----------|----------|----------|----------|---------------|
| | 21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실적 | 시·군·구 | | ○ | | |
| | 22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 시·군·구 | | | | ○ |
| | 23 | 차상위계층 수급자 비율 | 시·군·구 | | | | ○ |
| | 24 | 기초연금 수급률 | 시·군·구 | | | | ○ |
| | 25 | 장애인연금 수급률 | 시·군·구 | | | | ○ |
| | 26 | 지자체 전체 예산 대비 사회복지 예산 비율 | 시·군·구 | | | | ○ |
| | 27 | 인구 1만 명당 지자체 공무원 수 | 시·군·구 | | | | ○ |

다 시·군·구의 사회복지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급여의 의미
 - 보장기관(국가 또는 지자체)이 사회복지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함
- 자치구(시·군·구) 단위의 지역사회 복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사회복지급여제공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음
 - * 중앙행정기관의 국고보조사업 뿐만 아니라 지자체 자체 재원으로 수행하는 지역사업도 포함
-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현금/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사회복지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중심
-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우수지자체의 심의 사례

| 번호 | 심의안건(예시) |
|----|--------------------------|
| 1 | ‘시·군·구 특화사업’ 00지원 적정성 심의 |
| 2 | 예외적 복지급여계좌 개설 결정 심의 |
| 3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조건부과 제외 |
| 4 | 재산의 소득환산제외 심의 |
| 5 | 이자소득 반영제외 심의 |
| 6 | 생계급여 보장비용징수 대상자 감면 심의 |
| 7 | 부양의무자 보장비용징수 제외 심의 |
| 8 |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결정 심의 |
| 9 | 장애인연금 부당이득금 환수제외 심의 |
| 10 | 주거급여 부당이득금 환수제외 심의 |
| 11 | 기초연금 부당이득금 환수제외 심의 |
| 12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입주자 선정 심의 |

라 시·군·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 사회보장의 의미

-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함

예시

기초생활 보장, 의료급여 및 보육정책 등에 관한 사항도 사회보장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지역 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사항에 해당

- 사업의 성격상 국고보조사업 외에 지역사업을 포함하며, 주로 시·군·구 차원의 사회보장 사업 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에 초점

○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우수 지자체의 심의 사례

| 번호 | 심의안건(예시) |
|----|---------------------------|
| 1 | 자활기금 융자사업 개선방안 심의 |
| 2 | 자활지원계획 수립 심의 |
| 3 | 읍·면·동 협의체 지역특화사업 수립 심의 |
| 4 | 00운영체계 구축방안 심의 |
| 5 | 지역복지 00행사 추진계획 수립 심의 |
| 6 | 민관협력 개선방안 심의 |
| 7 | 사회복지기관·단체 직무역량강화교육 수립 심의 |
| 8 | 복지사각지대 발굴 홍보 및 인식개선 추진 심의 |
| 9 | 지역사회 자원통합관리 기능강화 방안 심의 |
| 10 | 권역별 복지박람회 개최 심의 |

(1)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제도(법정 사무)

* 법적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이하 영)

1) 제도 개요

1 관련 법령

- 사회복지법인은 이사정수의 1/3(소수점 이하는 절사) 이상을 시·도의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3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 (법 제18조 제2항, '17.10.24. 개정)
- 경과조치에 따라 법 시행 이후에 새롭게 선임되는 임원부터 동 규정을 적용 (부칙 제3조)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임원) ①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②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사 정수의 3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3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른 시·도사회보장위원회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2017.10.24. 개정>

2) 외부추천 이사의 구성 절차

* 사회복지법인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은, “2019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참조

1 법인의 추천 요청

- 법인은 추천 이사 선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인의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의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 한 기관에 이사 추천을 요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선임 사유란 전임 이사의 임기 만료, 사임, 해임, 이사 증원에 따른 신규 선임 등 법인이 외부 추천이사를 선임해야 하는 모든 경우를 의미
 - ※ 다만, 선임 사유가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경우(전임 이사의 임기 만료)에는 원활한 추천을 위해 임기 만료 3개월 전부터 추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영 제8조의2제1항 단서)
-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 어느 기관에 추천을 요청할 것인지는 법인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나, 법인을 지도·감독 하는 지자체에서는 행정업무 분담 차원에서 일정한 기준*을 정할 수 있음
 - ※ 예시 : 법인의 주사무소에 소재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요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추천이사의 선임

- 법인은 3배수로 추천받은 이사 중 1명을 법인의 이사로 선임
- 추천받은 이사가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취임 승낙을 하지 않는 경우 등 선임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추천 재요청을 허용하되, 이 경우에는 추천기관과 협의
 - ※ 재요청 절차는 법령상 추천 요청 절차에 준하여 하도록 함
 - ※ 추천기관은 재추천 요청에 대비하여 후순위자를 내정해 둘 수 있음
- 추천 이사 선임 절차는 다른 이사 선임 절차와 동일 (취임승낙서, 이력서, 특수관계 부존재각서 등을 받고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
- 법 제20조에 따라 결원 이사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하므로, 기간 내 추천 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조치
- 추천 이사를 선임한 후에는 시·도지사에게 법인 임원 임면보고를 해야 하고, 보고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반드시 첨부
 - ① 선임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② 임원의 취임승낙서, ③ 이력서, ④ 특수관계부존재각서, ⑤ 추천기관으로부터 받은 추천서를 첨부(규칙 제10조)

참고

외부추천이사제 시행 관련 각 지방자치단체별 조치 사항

- 사회복지법인을 관리·감독하는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제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법령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적인 세부 지침(법인의 추천 요청 기준, 요청 방법, 추천기관의 추천업무 처리 지침, 추천 방법 등)을 정하도록 할 것
- 세부 지침을 정할 경우 관할 법인 및 사회복지위원회·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 협의하되, 추천기관의 업무처리지침은 다음 기준을 참고하여 마련할 것

<기준 예시>

- 추천기관의 추천후보자 명단 작성 :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공개모집 및 타 기관 추천 등을 통해 추천후보자 명단(인력풀)을 작성·관리·업데이트 하고, 특히, 후보자 명단은 분야별(예: 아동복지분야, 노인복지분야, 장애인복지분야, 기타분야/ 시설운영분야, 지원사업분야 등)로 구분
- 이사 추천 수요 예비조사 :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반기별 또는 분기별로 해당 지역에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추천 수요를 조사(법인명, 법인 사업의 종류·내용, 추천필요 인원, 추천요청 예상 시기 등)
 - 이사추천후보자명단 확정 : 이사회(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협의체)를 중심으로 적격성을 가진 인사의 인력풀을 구성하여 이사 추천 후보자 명단으로 확정

- 정식 추천 : 수요조사 이후 법인이 공식적으로 추천 요청을 해올 경우, 이사회(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협의체) 회의를 통하여 추천 후보자 명단에서 적절한 사람을 선정하여 추천·통보
 -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경우 대표협의체를 통한 이사추천후보자명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실무협의체가 중심이 되어 추천 가능
- 수요조사 이외에 추천 요청하는 경우(예측치 못한 선임사유 발생의 경우 또는 수요조사에 비해 추천 인원이 증가하는 경우 등) : 추천 요청을 받은 후 가장 가까운 정기회의를 통해 추천자 결정·통보. 또는 정기회의가 요청 후 30일 이내에 없는 경우에는 서면 회의를 통해 추천을 진행하는 방안 검토
 - ※ 실질적인 추천방법 및 절차는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지자체 여건에 맞게 업무처리지침으로 정함

○ 외부추천이사 관련 유권해석 사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 가능 여부〉

질의
해석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제도 운영에 관한 내용이 「사회보장급여법」에 명시되지 않았어도, 「사회복지사업법」의 근거조항을 가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천해도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보장급여법」의 해당 조문의 해석과 관련, 관계 부서 간 협의를 거쳐 「사회보장급여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회복지법인의 외부이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과 관련된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요청('16.3.31.)한 바,
-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부여된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법령해석 결과('16.7.27)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에 명시된 내용과 같이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제도를 운영할 수 있음.

〈외부추천이사 임무와 책임한계 관련〉

질의

외부추천이사 선임 시 다른 등기이사와 책임사항이 동일하게 발생하는 건가요?

해석

외부추천이사와 등기이사는 이사 위촉 과정이 다를 뿐 협의체에서 추천한 이사가 최종 이사로 임명될 경우, 법인의 타 등기이사와 동일한 임무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 그 책임한계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해당 법인의 정관에 따라 그 범위가 정하여 진다고 볼 수 있음.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임기만료시, 협의체의 조치사항〉

질의

모 법인에서 외부이사 2인 중 임기 만료(두분이 만기일이 다름)가 되자 연임 의사가 있는 분은 등기완료하고 나머지 1분만 추천을 해달라고 저희에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법인의 입장은 외부이사로 받은 분을 연임의사가 있어 등기절차를 밟았다고 1명만 요청하는 사항인데 저희의 추천절차를 다시 밟지 않고 등기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업무처리를 해야할까요?

해석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법인은 추천이사 선임사유(임기만료, 사임, 해임 등)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외부이사 추천을 요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 선임 사유가 이사의 임기만료인 경우에는 임기만료 3개월부터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 외부이사 재선임에 관한 사항은 법인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며, 귀하의 질의사항과 같이 법인에서 외부이사 연임의사가 있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추천절차 없이 임원등기를 완료한 상황이면 이는 법인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외부이사 추천제도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 아울러, 법인에서 외부이사의 연임을 원할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재추천을 요청하여 재선임 절차를 받는 것이 합당할 것이며,
- 법인에서 외부이사의 연임을 원하지 않을 경우, 법인에서 요구하는 추천 요청 이사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법인의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이사를 추천하도록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요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 법인 외부이사 추천기관인 협의체는 당연히 해당 법인에 이와 같은 사실을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법인으로 하여금 법인 이사의 해임 및 재추천을 요청할 수 있도록 유선 또는 서면으로 안내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자격변동 발생시, 협의체의 조치사항〉

질의

기존에 추천했던 외부이사의 자격이 타 사회복지법인 대표자로 변경되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석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임원) 규정에 따라 시·도사회보장위원회나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외부이사를 추천할 경우, “외부이사의 추천자격은 동법 제7조제2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며,

- 이 중 제2호(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제3호(보건의료사업을 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제5호(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추천대상에서 제외”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이미 추천한 외부이사의 자격이 타 사회복지법인 대표자로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법률에서 규정한 외부추천이사의 자격에 위배되므로
- 외부이사 추천기관인 협의체는 당연히 해당 법인에 이와 같은 사실을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법인으로 하여금 이사의 해임 및 재추천을 요청할 수 있도록 유선 또는 서면으로 안내하여야 할 것입니다.

〈외부추천이사 이사자격 관련, 협의체 조치사항〉

질의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2항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제7조제2항 각 호(제2호, 제3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3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이와 관련, 제7조2항 3호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에 사회복지시설 대표가 3항에 포함되는지 여부

해석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2항 3호에 명시된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정의)에 명시된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근거로 할 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과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¹⁾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 추진배경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종합 대책」에서 민관협력을 통한 상시발굴체계 구축이 주요내용으로 포함(제7차 사회보장위원회, '14.5.)
-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강화를 위해 복지통(이)장제 및 읍·면·동 단위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추진(「읍·면·동 단위 인적자원망 강화 방안」 '14.7.)
 - 읍·면·동 단위 민관협의체의 성공모델 도출을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사업(공공주도형)” 시행('14년 1억원 5개소 → '15년 2억원 10개소)
- 복지지원 절차 구체화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강화 등을 위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제5호, 제6항에 읍·면·동 단위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근거 마련('15.7. 시행)
- “읍·면·동 단위 협의체 활성화” 확정(「제12차 사회보장위원회」 관계부처(행정자치부, 국무조정실 등) 합동, '16.2.3.)

2) 운영 원칙

☞ 기본 방향

- 시·군·구청, 시·군·구 협의체, 읍·면·동 주민센터 및 읍·면·동 협의체가 유기적으로 협력·사업 추진
 - 필요한 경우 시·군·구협의체 실무분과, 지역 내의 민간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확대 구성
- 지역사회에서 활용 가능한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
 - 사회복지관련 기관(노인, 장애인, 여성, 청소년, 아동, 보육 등) 자원 봉사 단체, 주민자치조직 등

1) 시·군·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시·군·구협의체),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읍·면·동협의체)로 표기

☞ 역할분담 및 추진체계

〈추진체계별 역할 분담〉

| 추진체계 | 역할 |
|--------------------|---|
| 시·군·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홍보 및 예산 지원 • 협의체 운영 근거(조례, 시행규칙) 제·개정 추진 |
|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서 심의 및 운영지원 • 읍·면·동 협의체 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워크숍 기획·운영 지원 • 읍·면·동 협의체 운영 모니터링 및 컨설팅 지원 • 읍·면·동 협의체 총괄 매뉴얼 마련 |
| 읍·면·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동 협의체 위원 추천 • 협의체 위원장 선출 및 자체 운영세칙 규정 • 위원이 발굴한 대상에 공적지원·민간지원 연계 및 지원 추진 • 읍·면·동 협의체 회의지원 및 회의록 관리, 행정 업무(회계 포함) 일체 담당 • 읍·면·동 협의체 연간 사업계획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각지대 발굴업무, 사회보장 자원발굴 및 연계,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등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주요 기능에 해당하는 사항을 작성 ** 시·군·구 차원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방안과 조율될 수 있도록 시·군·구 협의체 심의사항으로 상정 |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가구 등 지원대상자 발굴 및 복지자원 발굴 • 자체 특화사업의 지원대상자 결정 등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운영 • 시·군·구 차원에서 추진하는 공동사업 논의 |

☞ 시·군·구 운영매뉴얼 마련

- (필요성) 민관협력에 참여하는 지역주민은 매우 다양하므로 사업수행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
- (작성방법) 사회복지 전문 지식이 없는 지역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구성되어야 하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혹은 읍·면·동 협의체 대표 등과 사전 논의 후 확정
- (활용) 매뉴얼은 모든 읍·면·동 협의체에 공유되어야 하며 이를 잘 인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워크숍 등의 조치가 필요함
- (내용) 매뉴얼에 포함된 내용은 사업개요(목적, 취지 등), 협의체 구성방법 및 임기 등 기본적인 운영 규정 협의체 운영체계 및 담당 주체별 역할과 책임, 취약가구 발굴 시 조치방법과 지원과정, 후원 및 자원봉사 참여방법, 지역 복지자원 확보 방법 등

☞ 읍·면·동별 운영세칙 마련

- (필요성) 매뉴얼과 별개로 각 읍·면·동 별 협의체 구성·운영과 관련한 세칙 마련
- (작성방법) 각 읍·면·동별로 협의체 위원들이 논의하여 확정하되 기본적인 사항은 시·군·구 운영매뉴얼에 규정 가능
- (주요내용) 위원 구성 세부내용, 위원장 등 임원 정수 및 선출방법, 정기회의, 복지 대상자 발굴시 지원확정 방법 및 지원기준 등

3) 읍·면·동협의체의 주요 기능

1 복지대상자 발굴

- (시기) 연중 지속 실시하되 혹서기·혹한기 특히 유의
- (주체) 협의체 위원을 중심으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복지통(이)장, 공동주택관리자 (아파트관리사무소장 등), 건강음료 배달원, 가스검침원, 우편집배원 등 지역주민과 협력
- (방법) 주민 전수조사, 특정 취약계층(독거노인, 조손가정, 비정형거주자 등)에 대한 일제조사, 주민 탐문조사 등 활용
 - 지역주민 대상 홍보를 통한 발굴
 - * 주민홍보 및 참여독려를 위한 현수막, 인쇄물, 홍보물품 제작·활용
 - 주민등록일제조사 및 동절기 일제 조사 등과 연계
- (중점 발굴대상) 현재 복지지원 수혜 중인지 여부를 떠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데도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가구가 있는지 면밀히 관찰·발굴 필요

참고

〈중점 조사 및 발굴 대상〉

- 단전·단수·단가스 가구(최근 3개월 이상 체납가구) 및 최근 6개월 간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
- 최근 3개월 이내 기초생활수급 탈락가구 및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등으로 탈락한 가구
- 가족의 실직,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해 간병 등의 돌봄 부담이 과중한 가구
 - 소득기준에 따라 공적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가족돌봄 등의 과중한 부담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 가족 구성원의 뇌병변 등 지체장애와 발달장애 등 지적장애로 인하여 돌봄 부담이 큰 가구
-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 가족, 다문화가족 및 빈곤·학대·유기·방임 위기에 처한 아동·청소년 등
- 창고, 공원, 공중화장실, 역이나 터미널 주변, 비닐하우스, 교각 아래, 폐가, 컨테이너 등에서 생활하는 비정형 거주자
- 자녀와 관계가 단절된 독거노인 및 지적 판단능력이 미흡한 지적장애인 등

○ 발굴 후 처리방법

| 절 차 | 내 용 | 비 고 |
|---------------------|------------------------|--|
| 복지대상자 발굴 | - 읍·면·동협의체 위원 등 | * 읍·면·동 협의체 위원 만이 아니라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복지통(이)장, 부녀회(새마을), 적십자 등 지역사회 내에 직능단체 등 사례발굴시 협의체위원에게 전달 하거나 직접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접수 |
| 읍·면·동 주민센터 보고 | - 읍·면·동주민센터 담당공무원에게 접수 | * 발굴된 대상자에 대한 개인적 조사 실시 |
| 읍·면·동 복지담당자 확인 및 처리 | - 읍·면·동 복지담당자는 확인 후 처리 | * 자원 연계 순서 ① 공공자원 연계 : 기초수급자 대상 여부, 긴급 지원대상 여부 등 공공자원 먼저 확인 ② 사회복지시설 연계 : 종합, 노인, 장애인 등 지역사회 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서비스를 확인 후 연계 ③ 지역사회 내에 자원 연계 : 단순사례 또는 일회성 서비스는 읍·면·동 협의체 회의를 통해 지원 |

2 복지대상자 지원 확대를 위한 지역자원 발굴

○ 주최는 모금기관, 후원은 시·군·구(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되어야 함

* 공무원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직접 기부금 모집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유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① 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생략]

제6조(기부금품 출연 강요의 금지 등)

- ①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다른 사람에게 기부금품을 낼 것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모집종사자는 자신의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수행시기) 지속실시, 자원조사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
- (수행방안) 지역사회 민간 자원조사를 중심으로 한 지역 내 자원현황 조사, 지역 내 모금기관 자원 발굴 및 나눔·문화 확산 지원
 - 협의체 위원(민간) 중심으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복지통(이)장, 지역주민이 협력하여 추진
- (자원관리 및 활용) 행복e음 민·관 통합 자원관리 DB 입력(공무원) 시·군·구협의체-모금기관 간 협약체결 등으로 자체 활용 가능한 자원이 있는 경우 시·군·구협의체 운영세칙에 따라 지원여부 논의 후 결정·활용
 - * 읍·면·동장 및 읍·면·동 담당공무원인 위원은 민간위원들의 의사나 자유로운 논의과정을 제약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련 모금 안내 시 유의사항

[행정자치부 민간협력과-2793호('09.12.01) 관련]

- 가능사례 : 단순 접수 및 사용
 -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금 안내문 게시
 - 이 경우에도 안내문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이나 로고가 병기되어서는 안됨
 - 다만, '당해의 모금은 00시 민원실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등과 같은 접수와 관련된 단순 안내문이나 주최와 명확히 구분하여 단순 후원임을 표기한 문구는 사용가능
(예: 공동모금회, 00시(X) / 주최 : 공동모금회, 후원 : 00시(O))
 - 민원실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금함 설치, 홍보자료 비치
 - 이 경우에도 홍보물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지방자치단체가 병기되어서는 안됨
 - 다만, '당해 사업의 수입금은 00시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됩니다.' 등과 같은 기부금의 사용과 관련된 문구나 주최가 아닌 단순 후원임을 명시한 문구는 사용 가능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모은 돈을 지자체 복지사업에 사용
 -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과 관련된 부분만 금지되므로, 공동모금회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모집 금액을 지역의 복지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문제없음

- ☞ 매년 시달되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성금모금협조는 공무원의 기부를 요청하는 내용이며, 기부금품의 모집을 협조·요청하는 공문이 아님

□ 금지사례 : 기부금품의 모집

- 서신, 광고, 구두 그 밖의 방법을 통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의 기부금품 출연 의뢰·권유·요청
 - 동 행위에는 구두로 부탁하는 행위나 홍보물의 배포도 포함됨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지방자치단체 공동명의로 홍보물 제작
 - '07년도 주민생활지원 후원업무 처리지침('07.12. 행정자치부 주민서비스팀)에 따라 공동명의로 홍보물을 제작한 경우에도 기 제작된 홍보물은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내용을 수정(단순 후원임을 표시)하여 사용할 것
- 지방자치단체에서 후원자원(개인, 기업 등)을 발굴·관리하는 경우
 - 실질적인 기부금품의 모집에 해당되므로 금지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행사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하여 축사 등을 통해 기부를 부탁하거나, 기부 모집 퍼포먼스 등을 하는 행위
 -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의 단순참석,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의 기부를 언급하지 않는 일반적인 기부활성화와 관련된 축사, 테이프 커팅은 가능

3 지역 특화사업 추진

- (개념) 읍·면·동 내의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자체 복지사업
- (과정) 지역주민 욕구조사 → 지역의제 설정 → 시·군·구대표협의체 심의 → 서비스(사업) 개발 → 대상자 선정 → 지원 → 평가·환류
- (지역 특화사업 내용) 지역 내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특화사업 시행 가능
 - 특화사업은 노인, 장애인, 아동, 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 취약계층 및 위기가구 등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군·구는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특화사업에 필요한 예산지원 가능

예시 생계비·의료비·주거비·난방비·교육비·교통비 등 지원, 이동편의 제공, 집수리, 교육·문화 체험서비스 제공, 심리·상담서비스 제공, 급식(밀반찬) 및 물품지원 등

주의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너무 많은 지역 특화사업 추진으로 인해 핵심 역할인 복지사각 지대 발굴 등의 활동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유의할 것
⇒ 즉 지역특성이 반영된 2~3개 이내의 특화사업을 중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심의) 읍·면·동협의체에서 결정된 특화사업에 대해서는 시·군·구협의체 대표협의체의 심의를 거쳐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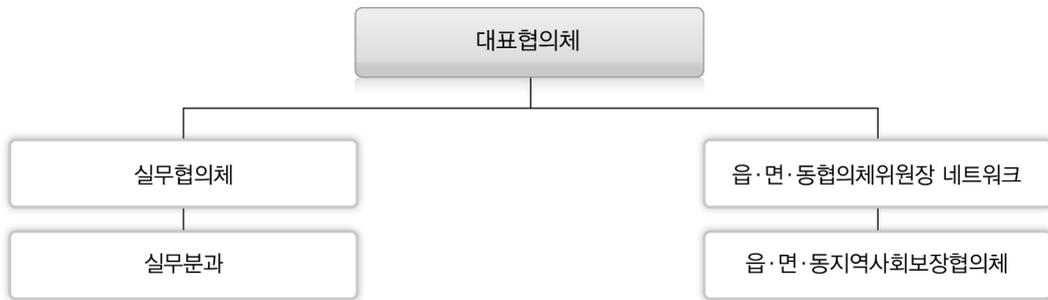
* 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매 건에 대한 심의를 지양하고, 주요 추진방향 및 내용에 대해 일괄 심의 후 그 범위 내에서 읍·면·동의 자율성 부여

4 시·군·구-읍·면·동 협의체 간 관계정립 및 연계방안(예시)

- 지역여건 및 역량 등에 따라 아래에 제시한 모형 중 해당 지역에 부합하는 모형을 취사 선택하여 적절하게 활용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발전단계 또는 민관협력의 활성화 정도 등에 따라 모형 적용 양상에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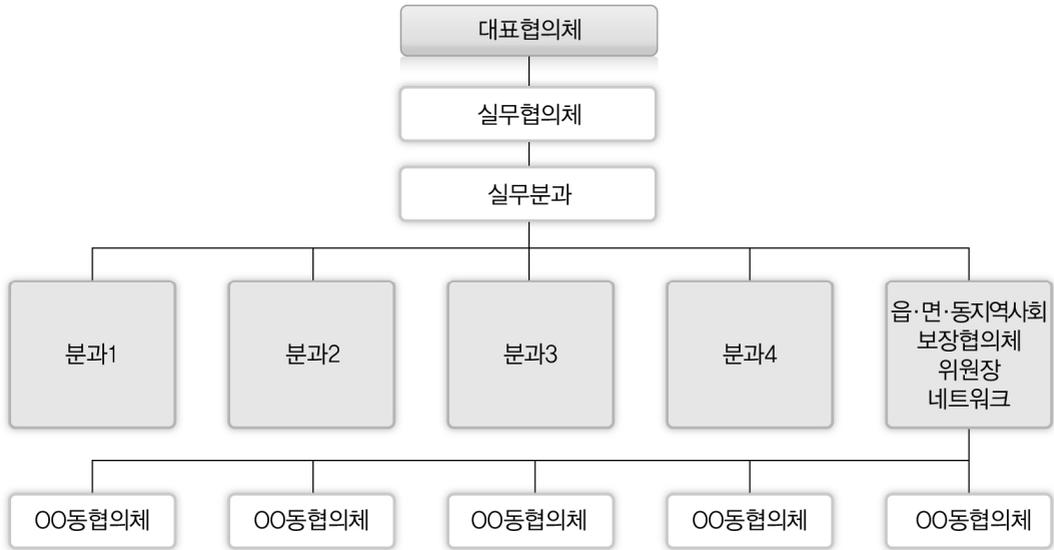
- (제1안) 대표협의체 내 구성



- (제2안) 실무협의체 내 구성



- (제3안) 실무분과로 읍·면·동단위 분과 별도 구성·운영



예시

읍·면·동협의체위원장 네트워크 구성 및 역할

- 읍·면·동협의체위원장 네트워크 구성
 - 목 적 : 읍·면·동협의체위원장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 시·군·구-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 정보공유 및 사업 협력 기반 마련
 - 구성방법 : 각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민간)
 - 규 모 : 00명(각 읍·면·동협의체 민간공동위원장)
 - 임 원
 - 읍·면·동협의체위원장 네트워크 대표 : 1명(대표협의체 당연직)
 - 읍·면·동협의체위원장 네트워크 부대표 또는 간사 : 1명(실무협의체 당연직)
- 읍·면·동협의체 위원장 네트워크의 역할
 - 각 읍·면·동협의체의 공동사업개발 및 건의
 - 각 읍·면·동협의체 간 정보공유 및 역할조정, 연계, 협력도모
 - ※ 읍·면·동협의체위원장 네트워크 회의개최 권장횟수: 연 3회 이상

☞ 시·군·구협의체의 읍·면·동협의체 운영 지원

- 읍·면·동단위 협의체 운영매뉴얼 마련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목록까지 포함된 운영지침과 매뉴얼을 제작하여 읍·면·동협의체 위원이 활동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함

- 읍·면·동 단위 협의체 위원에 대한 교육
 - 읍·면·동협의체 위원 대상 교육 : 시·군·구의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 현장에서의 응급조치, 자원 발굴 및 연계, 읍·면·동협의체 위원들의 역할 등을 교육
 - 시군구·읍면동협의체 위원 연합교육 : 법령 및 전달체계에 대한 이해, 시·군·구협의체와 읍·면·동협의체 위원 역할 상호이해, 시군구·읍면동협의체 연계 방안 등을 교육
- 시군구·읍면동 협의체 간 워크숍 개최
 - 시군구·읍면동협의체 연합워크숍을 통해 위원들이 서로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 서로 알아가고, 소통하는 시간을 통해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
- 시·군·구협의체 실무분과와 읍·면·동협의체간 공동사업 연계
 - 다양한 분야의 실무자들로 구성된 시·군·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와 읍·면·동협의체간의 연계 공동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
- 시·군·구협의체의 읍·면·동협의체 운영에 대한 자문역할
 -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에는 다양한 분야의 지역사회보장 전문가 단체·기관·학계 등이 참여하므로 읍·면·동협의체가 전문분야의 자문 요청시 자문단을 구성, 지원 가능
- 읍·면·동협의체 위원장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 각 읍·면·동협의체 민·관 위원장으로 구성된 ‘읍·면·동협의체 대표’ 등을 구성하여 읍·면·동 협의체 위원이 대표협의체 또는 실무협의체 위원으로 참여하여 시·군·구 협의체와 네트워크 유지
 - 시·군·구 협의체 사무국은 읍·면·동협의체 위원장 네트워크를 통해 각 읍·면·동 협의체 정보공유 및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지원
- 시·군·구협의체에서 읍·면·동협의체 회의, 사업 등에 관한 모니터링 및 컨설팅
 - 시·군·구협의체 사무국은 각 읍·면·동 실태 조사 및 모니터링을 통해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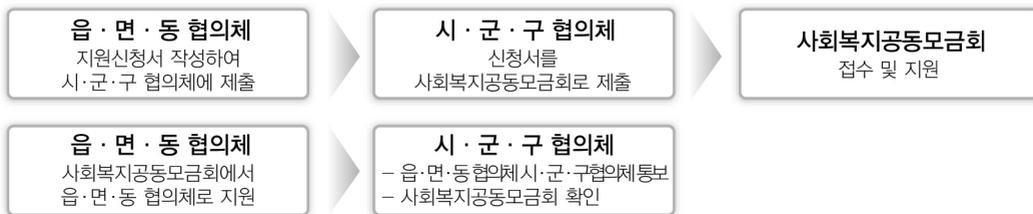
☞ 복지자원 발굴·지원시스템 구축·운영

-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 내 복지자원을 발굴·확충하여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지원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읍·면·동 협의체 지원 등을 위해 상시 복지자원 발굴·지원체계 구축·운영이 필요함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시군구·읍면동)는 「기부금품」에 따른 모집기관으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기부금품 및 후원금품 모집, 자체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기구이므로 복지자원 발굴을 위해 모집기관으로 등록된 기관과 MOU 체결 방식으로 지원체계를 구축함이 필요
- 상시 복지자원 발굴·지원시스템 모형 선택에 있어서는 각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
 - (제1안) 시·도 단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MOU 체결



- 읍·면·동 협의체의 통장개설²⁾ : 시·군·구 협의체의 고유번호증을 근거로 시·군·구 협의체에서 “000지역사회보장협의체(00동)”으로 통장개설 또는 읍·면·동협의체 직접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아 통장 개설
- 지원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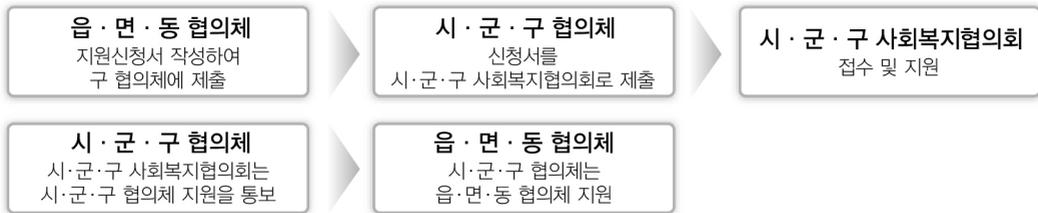


2) 각 읍·면·동별로 통장 개설할 경우 위원장 변경시 고유번호증과 통장 변경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시·군·구협의체 통장 개설 하는 방법이 효율적임.

- (제2안) (시·도 또는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와 MOU 체결



- 지원 절차



- (제3안)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관과 MOU 체결



- 읍·면·동 협의체의 통장개설 : 권역별 거점기관³⁾을 선정하여 사회복지시설의 고유번호증을 근거로 통장개설
- 지원 절차



MOU 체결 대상기관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월드비전, 초록우산재단, 아름다운재단 등 비영리 모금기관으로 등록된 단체들을 활용할 수 있음

바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예시)]

| 사업구분 | 내용 |
|--------------------|--|
| 연구, 조사 활동 | - 지역사회보장과 관련된 현안, 시책의 개발을 위한 연구·조사 활동을 함 - 지역사회 제공되는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주민 만족도에 대한 조사 사업을 수행함 |
| 서비스 연계·조정 | - 지역 내 인적·물적 복지자원을 발굴하여 서비스 제공기관의 연계와 조정을 통해 서비스 제공의 누락과 방지 예방함 - 사회복지 관련 자원을 총괄 정리하여 연계 가능 범주 등을 제시함(서비스 자원 목록화, 자원 공유 회의 등) |
| 통합사례관리를 위한 지원 | - 통합사례관리를 위한 영역별 지원 사업을 수행 함 |
| 교육, 훈련 및 세미나 개최 지원 | - 정책토론회, 세미나, 워크숍 등 지역사회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함 - 실무자를 위한 역량강화 사업을 계획하고 실시 함 |
| 기 타 | - 실무분과 특성을 살린 공동 사업을 추진함 - 지역사회보장 발전을 위한 서비스 통합과 지역사회 조직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개발하여 추진 함 |

3) 거점기관이라 함은 지역사회 내에 사회복지관련 시설로 시·군·구로부터 위탁시설을 맡함

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의 원칙

- 지역성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의 지역 안에서 가능한 일이므로 지역적 특성, 환경, 지역 주민의 욕구, 지역 내의 인적·물적 자원, 서비스 내용을 고려하여야 함
- 협력성
지역사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여 협의를 통해 각 주체별간 협력하여 역할을 수행해 나아가야 함
- 참여성
지역사회 네트워크 조직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협의체 특성상 주체의 구성원, 그리고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적극 이루어져야 함

2) 회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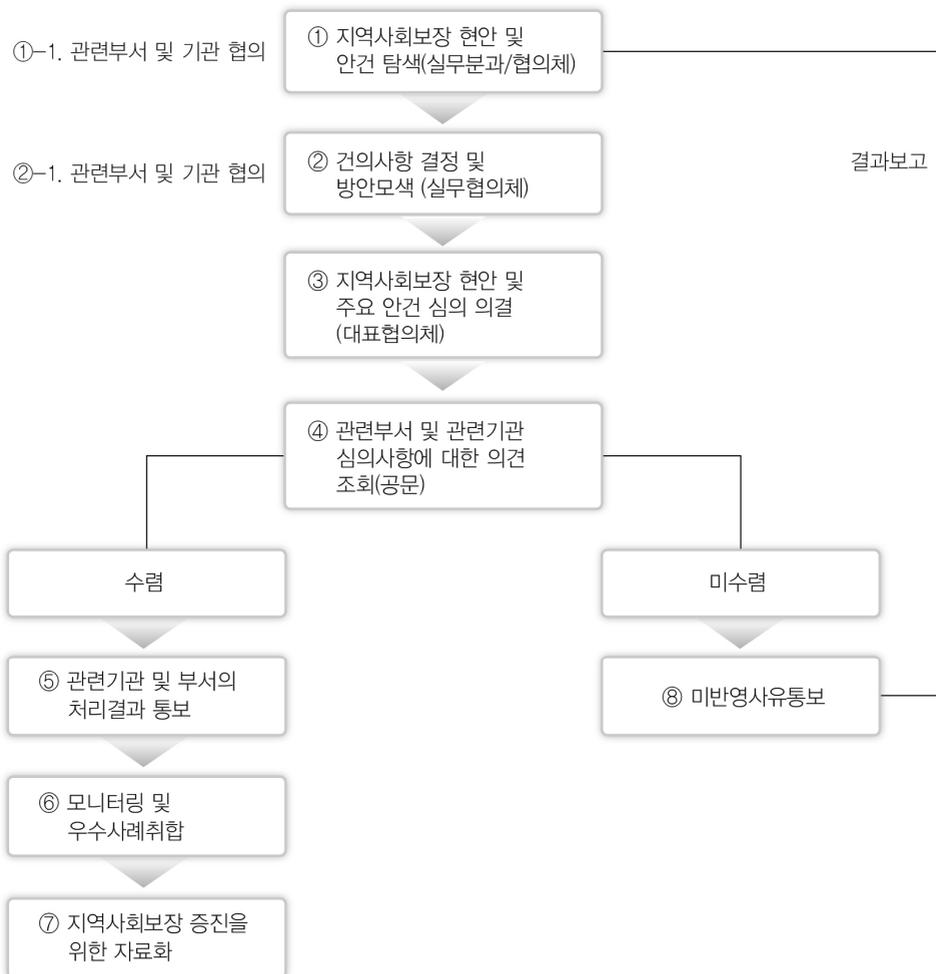
○ 주요 안건

| 주 체 | 심의·자문 안건(예시) |
|--------------------|---|
| 대표협의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시·군·구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 시·군·구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시·군·구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예시 : 연간 사업추진(운영)계획,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등) |
| 실무협의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협의체 심의 안건에 대한 사전 논의 및 검토 - 시·군·구 사회보장관련 시책 개발 협의 및 제안서 마련 - 실무분과·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현안 과제에 대한 검토 - 실무분과 공동 사업 검토 - 실무분과 간의 역할, 조정에 대한 수행 |
| 실무분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과별 자체사업 계획·시행·평가 - 지역사회보장(분야별)과 관련된 현안 논의 및 안건 도출 -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과정 모니터링 |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 지역의 지역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업무 지원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지원 -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지원 -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지원 (예시 : 읍·면·동협의체 특화사업 논의, 시행 관련, 대상자 지원여부 결정 협의 등) |

3) 의사 결정절차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자문안건에 대한 의사결정의 주요 내용은 지역 복지문제 해결이나 기존 사회보장서비스 간 조정 및 연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평가와 관련된 다양한 사항과 그에 대한 대안들의 선택에 대한 사항
- 의사 결정이란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대안들 중 하나를 선택하는 과정이며, 지역 사회가 우선시하는 목적을 구체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대안의 개발, 각 대안의 시행에 수반되는 비용들에 대한 확인 필요
 - 따라서 제한된 사회적 자원을 어떤 사회문제나 목적, 서비스에 투입할 것인지 등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 의사결정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며, 이해관계자 간 협의절차 필요

4) 안건 처리과정(예시)



- ① **지역사회보장 현안 및 주요 안건 탐색 (실무분과/실무협의체)**
 - 지역의 복지문제를 파악하고 자원 발굴 및 연계 등을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대안을 탐색하는 단계
 - 지역사회보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통상 협의체 심의·자문안건은 실무분과 → 실무협의체 → 대표협의체 순으로 단계적 논의
 - ※ 회의 시 검토 및 논의되어야 할 사항을 모니터링하는 단계
- ② **심의·자문사항 결정 및 방안모색(실무협의체)**
 - (필요할 경우)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및 대안을 모색하여 사안에 따라 행정 기관 및 서비스 제공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협조 요청을 결정하는 단계
 - 실무분과와 실무협의체, 실무협의체와 대표협의체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지역사회의 욕구와 자원을 충분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
 - ※ 실무분과 제안, 실무협의체의 검토 및 조정을 진행하고 대표협의체 회의를 통해 행정기관 및 관련기관의 협조요청 사항(제안사항)에 대해 근거 및 대표성을 확보하는 단계
- ③ **지역사회보장 현안 및 주요 안건 심의·자문(대표협의체)**
 - 역사회 내 관련기관 및 부서 간 충분한 협조를 통해 마련된 지역사회보장 현안 및 주요 심의·자문사항에 대해서 심의 의결
- ④ **심의사항에 대한 관계부서(행정기관) 및 기관 의견조회**
 - 지역의 욕구를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절차를 거침으로써 안건 및 의제 처리과정의 근거를 남기고 정당성을 확보
 - ※ 안건 및 의제에 대한 검토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더라도 자료화하여 지역의 욕구수준을 파악하고 추후 욕구변동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축적하는 과정 병행 필요
- ⑤ **관계부서 및 관련기관의 처리결과 통보**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사항이 관계기관 및 부서에서 수렴(수용)되었을 경우, 그 처리결과를 공문으로 요청하여 관련근거를 남기고 그 결과에 대한 자체 보고 실시
- ⑥ **모니터링 및 우수사례 취합**
 -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협의체 구성원은 긴밀한 협조관계 유지가 필수적이며 이러한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바람직한 모델을 정립
 - 또한, 우수사례를 취합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기관 등이 협의체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⑦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자료화

- 모든 안건·의제처리에 관한 사항은 자료화하여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

⑧ 미반영 사유통보

- 관계부서(지자체) 및 관련기관의 검토과정에서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공문으로 접수받아 실무분과, 실무협의체, 대표협의체 등에 결과보고
- 또한 의견 미반영 사유와 그 과정을 자료화하여 추후 지역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사 문제에 적절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향후 D/B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2) 행정 지원(예시)

1) 사무국(또는 전담직원)의 역할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또는 전담직원)은 다음의 역할을 수행

① 일반 행정관련 업무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예산 관리 및 운영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홈페이지 운영 및 홍보관리
- 대표 및 실무협의체 회의 자료준비, 회의록 정리, 회의 결과 보고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및 활동 내용 등의 지역사회 안내와 홍보

② 지역사회보장 증진에 관한 업무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집행 및 평가 진행
- 지역사회보장조사 실시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 설정
- 지역사회보장 자원개발 및 정보인프라 구축지원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목적에 부합하는 자체 사업에 관한 업무수행
- 시·군·구 사회보장 추진 및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③ 사회보장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의 조정 및 연계활동 업무

-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간 유기적 의사소통을 위한 조정 및 연계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지자체 간 유기적 의사소통을 위한 조정 및 연계
- 시·군·구 협의체와 읍·면·동 협의체 간 유기적 의사소통을 위한 조정 및 연계

- 지역사회보장 실무협의체 각 분과의 유기적 의사소통을 위한 실무분과 간 업무 조정·연계 및 모니터링
- 지역사회 민·관 서비스 연계시스템 공동개발 추진
- 지역사회 사회보장 관련분야 네트워크 체계구축
-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부 회의 개최·운영
 - 협의체 운영에 있어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고 각 구성체간의 역할을 담당하고자 임원회의를 운영할 수 있음
 - 임원회의 운영 : 매월 1회 개최(권장사항)
 - 임원회의 구성 : 대표협의체 민간공동위원장, 실무협의체 위원장, 사무국장 등 4인 이상으로 구성함(공공기관에서 참여할 경우 담당과장이 참여토록 함)
 - 임원회의 역할 : 시·군·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 향후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 공유하고, 협의체와 시·군·구간의 역할을 분담하여 각 구성체간 조직적인 협업을 수행
- ⑤ 기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위임받은 사항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전담직원 채용 및 복무

- ① 사무국 직원 선발
 -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보장기관(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의 활성화와 협의체 참여 사회보장관련 민간 및 공공기관 간의 연계·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음
 - 시·군·구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방보조금 등 재원을 활용하여 유급직원을 선발, 배치할 수 있음
- ② 전담직원의 자격요건(예시)
 - 협의체의 법적 성격 및 기능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자를 선발하여 관련업무 처리를 수행함
 - * 보수 지급 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따른 경우에는 직급체계의 승진 소요연수 등도 해당 지침내용을 준용할 수 있음.

| 직급 | 자격요건 | 비고 |
|----|---|-------|
| 국장 | ① 사회복지사1급소지자로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6년 이상 근무한자 ② 사회복지사 1급소지자로서 사회복지관련시설 및 기관에서 8년 이상 근무한 자 ③ 사회복지관련기관 및 단체에서 9년 이상 근무한 자 ④ 공무원 7급으로 6년 이상 근무한 자 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①-⑤와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하는 자 | 부장급 |
| 팀장 | ① 사회복지사1급소지자로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4년 이상 근무한자 ② 사회복지사 1급소지자로서 사회복지관련시설 및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③ 사회복지관련기관 및 단체에서 6년 이상 근무한 자 ④ 공무원 8급으로 4년 이상 근무한 자 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①-⑤와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하는 자 | 팀장 |
| 직원 | ① 사회복지사1급소지자로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한자 ② 사회복지사 1급소지자로서 사회복지관련시설 및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③ 사회복지관련기관 및 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④ 공무원 9급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①-⑤와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하는 자 | 사회복지사 |

참고

⑥항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동등한 자격이 인정되는 자”라 함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함

- ①, ② 항과 동등하거나 또는 그 이상이라고 일반적으로 평가하는 자격증이나 학위를 소지 하고서 동일한 또는 그 이상의 현장경험이 있는 자를 말함
-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 1급 대신에 청소년상담사 1급이나 교육학·사회복지학 관련 석·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이 6년 이상의 현장경험이 있을 때, 사회복지사 2급자격증 대신에 청소년 상담사 2급이나 교육학·사회복지학 관련 석·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이 7년 이상의 현장경험이 있을 때를 말함

③ 전담직원 처우수준(권고)

- 전담직원의 급여는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이용시설 직원(사회복지직)의 기본급 권고 기준과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수당 기준을 적용

| 수당의 종류 | 지급액 | 지급회수 및 지급일 |
|---------|---|--|
| 명절휴가비 | 기본급 × 60% × 연2회 | 설과 추석에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 |
| 가족수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 월40,000원 ○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째 자녀 월20,000원 - 둘째 자녀 월60,000원 - 셋째이후 자녀 월100,000원 ○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월20,000원 | 매월 보수지급일 부양의무자의 동일주소 또는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수에 따라 지급 |
| 시간외근무수당 | 통상임금×1/209×1.5 | 매월 보수지급일 월 10시간 적용 (통상임금 : 기본급+복지수당) |
| 복지수당 | 월50,000원 | 매월 보수지급일 |
| | 월100,000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경력인정 범위 내에서 5년이상 근무자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 3년이상 근무자 |

- 직급은 사무국장(부장급), 팀장(팀장급), 직원(사회복지사)으로 하되 협의체 사무의 지속성 및 안정적 추진을 위해 근무형태는 무기계약직을 원칙으로 함(권고사항)
- 기존 사무국 직원은 자격요건에 근거하여 경력을 계산하여 직급 적용
- 사무국 직원 경력 산정기준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의 경력 인정 범위를 준용

* 유사기관에서의 경력인정 :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에 의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직원(상근간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은 유사경력으로 80%를 인정함
 ※ '12.1.1. 이전에 근무한 경력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5.1.1부터 적용
 * 동일기관에서의 경력인정 : 지역사회복지(보장)협의체 경력은 100% 인정함

- 전담 직원에 대한 보수지급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 시·군·구는 보건복지부의 매년 사회복지이용시설(복지관) 종사자 보수체계 등을 참조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소속 직원의 봉급 및 호봉획정, 수당, 퇴직금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④ 채용방식

- 전담직원 채용은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관하에 공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함
- 공개 채용 시 시·군·구 홈페이지, 협의체 홈페이지, 소식지 등에 채용에 관한 사항을 10일 이상 공고한 후에 시·군·구의 채용규정 등을 준용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함

⑤ 복무규정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로조건(「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 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할 수 있음(지자체 선택사항)
- 전담직원 업무수행 및 일상생활상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징계 사항
- 근무시간, 휴게시간, 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 연가 등 복무에 관한 사항

⑥ 전담직원의 업무처리절차

- 결재과정 : 사무국장 → 실무협의체위원장 → 대표협의체 민간 공동 위원장
- 실무를 담당하는 실무분과·실무협의체와 대표협의체의 긴밀한 상호연계를 위해 위임 및 전결규정을 두어 직원 → 실무협의체위원장 → 대표협의체 민간 공동 위원장으로 진행할 수 있음
- 민관협력사업, 시책개발, 정책관련 사업 등 협의체의 주요 사항은 반드시 대표 협의체공동위원장(민간·공공) 결재를 받도록 함

※ 민관협력사업, 시책개발, 정책관련 사업 결재는 각 시·군·구의 현실을 고려하여 다르게 진행할 수 있으며 관련부서의 협조를 받을 수 있으며, 결재서류를 단일 문서(1개)로 진행 하되, 동시에 처리하여야 함
(ex) 사무국 ↳ 민간분야 담당공무원 ↳ 공공분야

※ 사안별 위임전결 규정(권장사항)은 다음 내용과 같음

〈위임전결 규정(권장/예시 사항)〉

| 구분 | 업 무 내 용 | 결재권자 | | | 비고 |
|--------------|----------------------|------|-------|-------|----|
| | | 사무국 | 실무위원장 | 대표위원장 | |
| 업무관리 | 협의체 운영계획 | | | | |
| | 운영 계획의 수립 | | ○ | | |
| | 운영 계획의 확정 | | | ○ | |
| | 확정된 계획의 시행 | ○ | | | |
| | 협의체 회의 | | | | |
| | 대표협의체 상정안 마련 | | ○ | | |
| | 대표협의체 회의 개최 및 결과보고 | | | ○ | 공공 |
| | 실무협의체 상정안 마련 | ○ | | | |
| | 실무협의체 회의 개최 및 결과보고 | | ○ | | |
| | 실무분과회의 개최 | | ○ | | |
| | 전체(연석)회의 개최 및 결과보고 | | | ○ | 공공 |
| | 업무 처리 및 협조 | | | | |
| | 기관 중재안 통보 | | | ○ | 공공 |
| 기관간의 협조사항 처리 | ○ | | | | |
| 사업관리 | 사업의 시행 | | | | |
| | 지정사업 및 결연사업의 계획 | | ○ | | |
| | 지정사업 및 결연사업의 확정 | | | ○ | |
| | 확정된 계획의 시행 | ○ | | | |
| | 홍보 활동 | | | | |
| | 자체(협의체 분과위원 이상 대상) | | ○ | | |
| | 대회(매체 활용 및 발간) | | | ○ | |
| | 교육 활동 | | | | |
| | 자체(실무위원 및 분과위원) | | ○ | | |
| | 대외(협의체 위원 및 외부인원 교육) | | | ○ | 공공 |
| | 조사연구 | | | | |
| 조사연구계획의 수립 | | ○ | | | |

| 구분 | 업 무 내 용 | 결재권자 | | | 비고 |
|-------------------|-----------------------|--------|-------|-------|-------------------------|
| | | 사무국 | 실무위원장 | 대표위원장 | |
| | 조사연구계획의 확정 | | | ○ | 공공 |
| | 조사연구사업의 시행 | | ○ | | |
| | 조사연구사업의 결과보고 | | | ○ | 공공 |
| 사무관리 | 사무관리 | | | | |
| | 문서의 통제 | ○ | | | |
| | 인장관리 | ○ | | | |
| | 기관의 자료수집 및 요청 | ○ | | | |
| | 각종 장부의 기장확인 및 증빙확인 | | ○ | | |
| | 사무실 관리운영 | ○ | | | |
| | 예산 결산 | | | | |
| | 예산 결산의 총괄 | | | ○ | 시·군·구 담당 팀장 협의 |
| | 예산 편성과 교부신청 | | | ○ | |
| | 예산의 정산보고 | | | ○ | |
| | 추경예산안 편성 | | | ○ | |
| | 구입과 지출 | | | | |
| | 물품의 구입과 지출 | ○ | | | |
| | 정지지출(제세공과금, 기금, 급여 등) | ○ | | | |
| | 사무실 운영 및 회의 운영 | ○ | | | |
| | 위원참석수당 지급 | ○ | | | |
| | 예산의 집행 | | | | |
| | 예산의 집행(400천원 초과) | | ○ | | |
| | 예산의 집행(400천원 미만) | ○ | | | |
| | 직원관리 | 직원의 관리 | | | |
| 직원의 채용 계획 | | | ○ | | 시·군·구 담당자 협의 |
| 직원의 채용 및 임용 | | | | ○ | |
| 직원의 연가 및 출장, 파견근무 | | | ○ | | |
| 직원의 복리후생 | | | ○ | | |

* 비교란의 '공공'은 공동위원장(민간, 공동) 결재를 의미함

⑦ 사무실의 설치·운영

- 지자체는 협의체 소속 직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가급적 독립적인 사무공간을 마련하여 운영

⑧ 기타 사항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과 관련된 그 밖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별로 조례 또는 자체 협의체 운영규정을 수립하여 운영함
- 공무원이 아닌 대표협의체·실무협의체·실무분과 관계자 및 직원은 필요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지역 간 정보교류, 우수 사례 공유 등을 위한 모임에 참가할 수 있음

IV

PART

기타사항

[청탁금지법 관련]



보건복지부

기타사항

IV Part

1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 및 적용 안내

- 공무수행사인(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적용사항-

1 「청탁금지법」 적용, 공무수행사인이란?

- (정의)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간인 등의 공무수행사인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에 해당
 - 따라서,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위원이 적용대상에 해당
 - * (적용범위)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각종 심의·평가등 위원회 위원 등을 포함하므로 「사회보장급여법」에 근거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도 적용대상
- 다만, 공무수행사인은 공직자등과 달리 청탁금지법의 적용에 있어 소관 ‘공무수행(직무 관련성)에 관하여서만’ 한정적으로 적용
 - 즉,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경우,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에 따른 협의체의 기능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에 한하여 적용

직무관련성 해석 내용

- * 직무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2 공무수행사인에 적용되는 「청탁금지법」의 내용

- (적용범위) 공무 수행과 관련된 범위에 한하여 부정청탁 및 그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 신고 및 처리, 금품등의 수수 금지 및 신고 처리만 적용(법 제5조부터 제9조)
- ① (부정청탁)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금지(부정청탁 유형을 15개로 구체화)

부정청탁 행위 유형 15개

1. 불법 인허가·면허 등 처리
2. 법령을 위반한 행정처분·형벌부과의 감경·면제
3. 채용·승진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한 직무
4.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탈락되도록 개입
5. 공공기관 주관 수상·포상 등의 선정·탈락에 개입
6.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누설
7. 특정인의 계약 선정 또는 탈락에 개입
8. 보조금·기금 등의 배정·지원·투자 등에 개입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10. 입학·성적·수행평가 등 학교업무의 처리·조작
11. 법령을 위반한 병역관련 업무 처리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 개입
13. 행정지도·단속 등의 대상 배제, 위법사항 묵인
14. 사건의 수사·재판 등에 개입
15. 위 14가지의 유형에 대한 공직자등이 지위·권한 남용

- 또한, 국민의 정당한 권리주장 위축 방지를 위해 공개적인 방법으로 청탁하는 경우 등 부정청탁 예외사유를 규정(7개)

부정청탁 예외사유 7개

1. 법령·기준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2.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3. 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
4.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해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
5.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6.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7.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 (대응요령) 부정청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수용하지 아니하면(청탁에 따라 직무를 위법·부당하게 처리하지 아니하면)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아니함
 - ※ 다른 공직자들을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나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들에게 부정청탁이 전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청탁이 성립될 수 없음
 - 단계적 확인절차를 거쳐 부정청탁 해당여부를 명확히 구분하고 청탁 거절 의사표시 등 현명하게 대처 필요
 - ※ ‘법이 그래서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없어 할 수 없습니다’ 등과 같은 정도의 의사표시 필요
 - √ 청탁 거절로 인간관계 단절이나 직·간접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게 되는 경우 심리적 갈등이 존재하므로 청탁금지법을 근거로 고민없이 거절하여 심리적 갈등 최소화
 - (신고·처리 방법) 협의체 위원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거듭되는 경우 소속기관장(읍·면·동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 병행
 - * (소속기관장)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수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부정청탁에 관한 주요내용·조치사항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조치
-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요건이 인정되어야 적용되는 것이므로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3만원·5만원·10만원 이내의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라도 청탁금지법 위반이 된다고 보고 있음.
 - *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공직자등과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해야 함

- (금품 수수)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제공) 약속 금지
 - 다만, 협의체 위원의 경우에는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수하는 경우에만 위반행위에 해당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 등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 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7.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 (공무수행사인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 금지) 배우자가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받은 경우, 공무수행사인이 이를 알았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만 공무수행사인을 제재조치
 -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 신고
 - * (소속기관장)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즉시 금품 등을 반환·인도·거부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고, 수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

✓ 청탁금지법 관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질의사항 FAQ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Q 01 민간인 신분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어떤 근거로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나요?

- A**
- 지난 9. 28.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제1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 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령집」(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심의 등 위원회 위원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청탁금지법 적용 범위〉

Q 0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에게 적용되는 청탁금지법의 내용과 범위는 무엇인가요?

- A**
- 〈적용범위〉 공무수행사인에 대해서는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부정청탁의 금지 및 그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금품등의 수수 금지 및 신고 처리)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관련 규정은 미적용
 - (부정청탁)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무(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한정)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
 - (금품 수수) 직무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금지되는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도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수하는 경우에만 위반행위에 해당
 - * 다만, 수수 금지 금품등에서 제외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법 제8조제3항 각 호)

IV

〈부정청탁을 받은 제3자가 직무수행 공직자등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제재 여부〉

Q 03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위원이 직무수행 중 제3자(지역주민 등)로부터 부정청탁(복지급여 또는 서비스 지원 등) 요청을 받아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 등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부정청탁 요청을 한 제3자 및 위원은 제재를 받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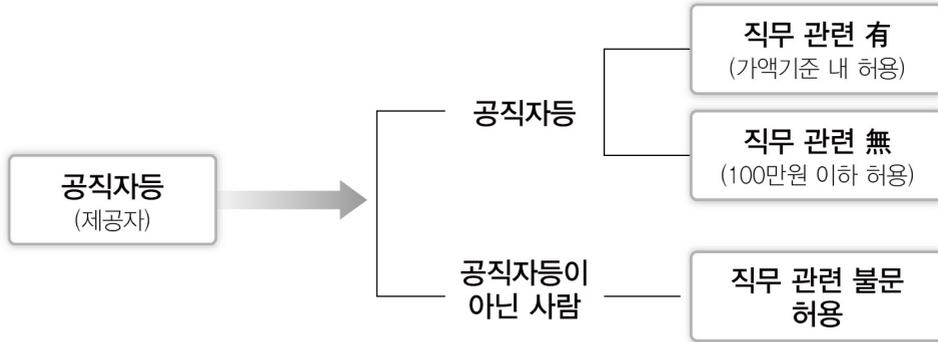
- A**
- 법 제5조제1항에서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제3자(지역주민 등)로부터 부정청탁(복지급여 또는 서비스 지원 등)의 요청을 받은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제3자(지역주민 등)가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을 위한 공정한 요청사항일 경우 법령·기준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른 사유이므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필히 전달해야 합니다.

〈공직자등이 민간인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의 허용 여부〉

Q 04 협의체 위원이 ① 민간인, ② 직무와 관련 없는 다른 공직자등, ③ 직무와 관련이 있는 다른 공직자등에게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의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줄 수 있는지?

- A**
- 청탁금지법상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규정이 공무수행사인에게도 적용되므로 당연 적용
 - 다만, 협의체 위원(공무수행사인)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에게는 직무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줄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나,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이 금품등을 받는 행위는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등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줄 수 있습니다.
 - 다만,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인 경우에 한하여 가액기준 범위 내에서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줄 수 있도록 제한됩니다.

※ 예시



〈공직자등과 민간인이 혼재된 모임에서 식사〉

Q 05 협의회 위원이 사적인 모임에 공직자와 민간인 여러 명이 함께 가액기준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를 한 후 공직자등이 계산한 경우와 공직자등이 아닌 사람이 계산한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은?

- A**
- (공직자등이 계산한 경우) 공직자등은 민간인에게 직무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식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등에게도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식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인 경우에 한하여 가액기준(1인당 3만원) 범위 내에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한됩니다.
 - (민간인이 계산한 경우)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이 없는 민간인으로부터는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이 있는 민간인으로부터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인 경우에 한하여 가액기준 범위 내의 식사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공직자등의 경조사에 찾아온 하객에게 제공하는 음식물〉

Q 06 협의체 위원(공무수행사인)이 경조사에 찾아온 손님에게 가액기준(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를 받고 가액기준(3만원/인)을 초과하는 음식물 등을 제공할 수 있나요?

- A**
- 경조사에 찾아온 손님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는 것은
 - 우리 사회의 전통 풍습이고 특정 공직자들에게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 가액기준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 등을 제공하더라도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축제 협찬〉

Q 07 지자체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축제와 관련하여 민간 기업 또는 민간인 등이 수건, 생수 등을 협찬할 수 있나요?

- A**
- 협찬이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먼저, 절차적 요건으로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합니다.
 - 다음, 실체적 요건으로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합니다.
 - * 다만, 수수 금지 금품등에서 제외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 금지규정 비적용 범위〉

Q 08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 중 공직자 등이 아닌 민간인 등에게도 금품등의 수수 금지 규정(법 제8조)이 적용되나요?

- A**
- 자신이 맡고 있는 위원회의 업무(공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한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자신이 맡고 있는 위원회의 업무, 즉 ‘공무수행에 관하여’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 부정청탁 금지 규정의 경우도 자신이 위원으로 맡고 있는 공무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그 밖에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원회의 통상적 회의 종료 후 식사 가능 범위〉

Q 09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중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민간 위원과 함께 통상적 회의가 끝난 후 식사를 할 수 있나요?

- A**
- 통상적 회의가 끝난 후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 위원(공무수행사인)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3만원 이내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환영과 석별의 의미를 가지는 위원의 임기만료 등에 의한 이·취임, 한 해의 업무를 시작하거나 마치는 시점의 시무식·종무식 등
 -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따라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3자를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 - 사회보장급여 제공〉

Q 10 협의체 위원(A)가 지역유지 민간인(B) 또는 시·군·구청 공무원 (C)에게 사적 친분이 있는 민간인(D)가 시·군·구(읍·면·동)을 통하여 지급하는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지역유지(B)와 공무원(C)가 해당 업무 담당공무원(E)에게 부탁을 전달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 A**
- 공무수행사인에게도 부정청탁 금지의무가 당연히 적용됩니다.
 - 협의체 위원(A)는 제3자(D)를 위하여 공무원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에 해당하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 민간인(B)과 공무원(C)가 해당 업무 담당공무원(E)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에 해당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

Q 11 도움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복지대상자)가 담당공무원에게 사회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직접 청탁하는 것을 괜찮나요?

- A**
- 자신의 일에 대해 직접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것은 금지되고,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공공기관과 국민 간의 활발한 의사소통 기회 보장 등을 위해 입법정책적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에서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 한편, 국민의 정당한 권리주장 위축 방지를 위해 공개적인 방법으로 청탁하는 경우, 부정청탁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부정청탁 성립요건 - 법령 위반〉

Q 12 협의체 위원(A)가 아는 지인(B)로부터 ‘어렵겠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기초생활보장업무 담당공무원에게 지인(B)의 수급자 선정을 부탁한 경우, A와 B에 대한 청탁금지법 적용은?

- A**
- 위원(A)는 지인(B)의 청탁을 받고 담당공무원에게 부탁을 하였으므로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여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 지인(B)는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에 해당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 수급자 선정 등 공직자등의 직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하며,
 - 「사회보장급여법」 등의 법령을 위반하여 선정여부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수수금지 금품 등의 신고/처리 ‘지체 없이’의 의미〉

Q 13 협의체 위원(A)가 아는 지인(B)로부터 사회보장급여를 받은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사례금을 받고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돈을 돌려주었을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은?

- A**
- 위원(A)의 경우 돈을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지체 없이 신고·반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지체 없이 신고·반환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제재대상에 해당합니다.
 - 다만, 신고·반환이 지체되기는 하였으나, 자진하여 신고·반환하였으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 공직자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 등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합니다.
 - 이 때 ‘지체 없이’라 함은, ‘불필요한 지연 없이’ 를 의미하며, 지체 없이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지체 없이 반환한 공직자등은 제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정청탁의 성립요건 - 법령 위반〉

Q 14 협의체 위원(A)가 아는 공무원에게 어떤 행위를 부탁하면서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재량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해달라고 하는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 여부는?

- A** • 형식상 재량의 범위 내에서 처리해 줄 것을 부탁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법령*을 위반해서라도’ 또는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을 벗어나서라도’ 처리해 달라는 의미의 청탁이었고,
- 이에 대해 청탁을 하는 자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 간에 내심의 의사가 합치하여 법령을 위반한 직무수행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 ‘법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이 포함되고, 부정청탁 대상 직무와 직접 관련된 개별 법령 외에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등의 일반 법령도 포함되며, 각종 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절차법 포함

〈보조금·장려금 등 배정·지원 개입 등 관련 부정청탁〉

Q 15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주민(A)가 협의체 위원(B)에게 지자체 보조금 담당공무원(C)에게 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보조금을 받게 해달라고 청탁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A, B, C에 대한 청탁금지법상 제재는?

- A** • 보조금법령 등을 위반하여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님에도 보조금 지급을 받게 해 달라는 청탁은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주민(A)는 제3자(위원 B)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 협의체 위원(B)는 제3자(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고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직자등(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므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 담당공무원(C)는 협의체 위원(B)의 부정청탁에 따라 지급 대상이 아닌 주민(A)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므로,
 -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 공무원으로서 신분예 영향을 미치는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

〈공공기관의 재화·용역 등 관련 부정청탁〉

Q 16 지역주민(A)는 주거여건이 열악하여 시·군·구 또는 읍·면·동을 통해 집수리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당장 지원이 어렵다고 하자, 협의체 위원(B)에게 먼저 집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하였고 담당공무원(C)은 당초 입장을 번복하여 집수리를 받도록 한 경우, A, B, C에 대한 청탁금지법상 제재조치는?

- A**
- 지원 순서대로 하지 않고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하여 먼저 지원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지역주민(A)는 제3자(위원 B)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며,
 - 협의체 위원(B)는 제3자(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 담당공무원(C)은 협의체 위원(B)의 부정청탁에 따라 지원 순서를 변경하여 집수리를 지역주민(A)가 우선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 형사처벌의 대상이며,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

〈법정기한 내 처리요구 등〉

Q 17 지역주민(A)는 사회보장급여를 읍·면·동에 신청하였고, 자신의 친구인 협의체 위원(B)에게 진행상황에 대해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여부는?

- A**
- 「사회보장급여법」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하나,
 - 신청 업무의 진행상황에 대한 단순 확인·문의를 한 것은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처리절차〉

Q 18 지역주민(A)는 사회보장급여를 읍·면·동에 신청하였고,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협의체 위원(B)에게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힘 써달라는 청탁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에 따른 처리방법은?

- A**
- 지역주민(A)는 제3자(위원 B)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 협의체 위원(B)는 제3자(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에 해당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 청탁을 받은 협의체 위원(B)는 부정청탁 신고·처리 절차에 따라 법률 위반행위에 대하여 공공기관·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보상 책임이 이루어짐).
 - 신고내용에 대하여 감사·수사·조사를 통해 결과에 따라 공소제기, 징계처분 등의 결과와 조치사항 등을 신고자에게 통보합니다.

〈동일인으로부터 음식물, 선물, 부조금을 함께 받은 경우〉

Q 19 협의체 위원(A)가 협의체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지인(B)로부터 음식물, 선물, 부조금을 함께 받은 경우 어떤 가액기준이 적용되는지?

- A** • 동일인으로부터 음식물, 선물, 부조금을 함께 수수한 경우 각각의 가액을 모두 합산하되, - 이 경우 수수가 허용되는 가액의 상한액은 1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별표 1]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 관련)

| 구분 | 가액 범위 |
|--|-----------|
| 1. 음식물 :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 3만원 |
| 2. 경조사비 :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 | 5만원 /10만원 |
| 3. 선물 :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 | 5만원 /10만원 |

비고

-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또는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 다.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고의없이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

Q 20 협의체 위원(A)가 동장(B)의 전화로 저녁식사를 위해 식당으로 가서 읍·면·동장과 함께 있는 지역주민(C)와 함께 식사를 하고 지역주민(C)가 식사비용 30만원을 계산했는데, 위원(A)는 지역주민(C)를 몰랐고 동장(B)가 식사비용을 계산한 것으로 안 경우 A, B, C에 대한 청탁금지법상 제재조치는?

- A**
- 위원(A)는 지역주민(C)로부터 식사를 접대 받는 데 대한 고의가 없으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동장(B)는 직무와 관련하여 지역주민(C)로부터 30만원 상당의 식사(B가 초대한 A의 접대에 소요된 비용 포함)를 접대받았으므로,
 -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며,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
 - 지역주민(C)는 직무와 관련하여 동장(B)에게 3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였을 경우,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 다만, 직무관련성이 없는 식사를 제공하였을 경우,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직무관련성은 직무내용, 금품등 AB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준으로 일차적인 판단은 소관 공공기관(청탁방지담당관)이 하게 됩니다.

〈기념품·홍보용품 단순 전달한 경우〉

Q 21 교사, 공공기관장 등의 공직자등으로부터 다수인(학생, 소속직원 등)에게 단순히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협의체 위원이 달력, 수건, 생수 등 기념품·홍보용품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 A**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해 제작된 기념품·홍보용품을 공직자등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전달의 편의를 위해 전달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고,
 - 공직자 등이 금품등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2019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

- 인 쇄 일 2018. 12. 31.
- 발 행 일 2018. 12. 31.
- 발 행 처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 주 소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 인쇄/디자인 ㈜이문기업